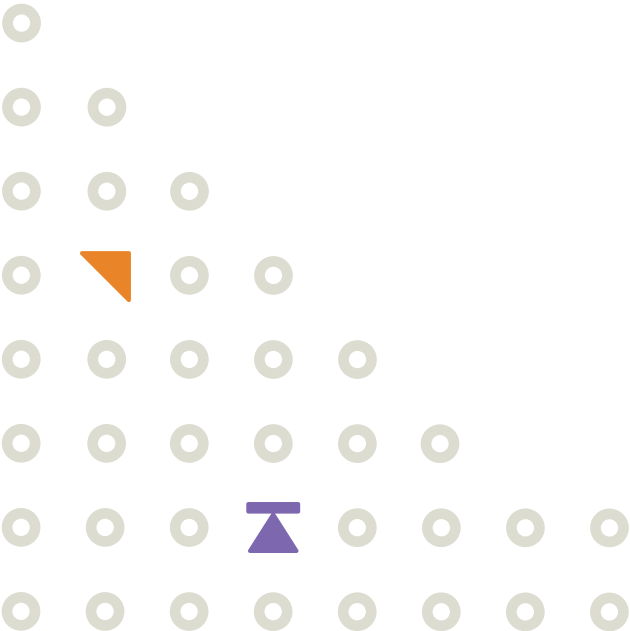




#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백미연  
박보람





#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연구 책임 백미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

연구 지원 김지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 ||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http://www.gwff.kr)

인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32-723-4 (93330)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 발 간 사

2024년 상반기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8월의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초중등 학교의 학생 집단 사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연예산업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아동·청소년, 대학생, 군인, 성인 일반인 등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배덕(背德) 문화'의 확산이 확인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그리고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피해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과 2차 피해 중심 내용과 주변인 접근법을 결합한 대안적 형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제안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지원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조사와 자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된 경기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연구 요약

# 1. 서론

##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2024년 상반기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8월의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초중등 학교의 학생 집단 사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혹은 불법 합성물 제작·반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주목받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연예산업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아동·청소년, 대학생, 군인, 성인 일반인 등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배덕(背德) 문화’의 확산이 확인되었음.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의식하며 부랴부랴 종합적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TF를 구성하며, 입법적 조치와 대대적인 집중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조치 등을 쏟아 내기 시작함.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 수준에서도 피해접수와 피해자 지원, 예방 조치 등이 이뤄졌음.
- 그러나 그 이후 불법 계엄 및 탄핵, 정권교체 등으로 이어진 급격한 국내 환경의 변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이슈는 다시 수면으로 가라앉고 있음.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그리고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피해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 가야 할 것임. 따라서 경기도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피해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물적, 인적 인프라 확대와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2024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법적, 행정적 조치의 진전 과정과 법적, 제도적 측면의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의 피해지원과 예방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지원과 예방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음.

##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현황과 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정을 분석하여, 대응에서의 제도적, 실제적 한계를 도출함.
-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하여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 의견조사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제도적, 실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법과 정책의 시사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경기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함.
- 국내외에서 발전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와 정책,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문헌 연구와 젠더폭력 분야 연구자, 젠더폭력 분야 전문 법조인, 피해지원 업무 관계자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함.

## 2.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 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SEcurity HER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라인에서 확인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이며, 상위 10개의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통된 딥페이크 포르노물은 3억 364만 207건임. 딥페이크 포르노물의 피해자는 여성이 99%, 남성이 1%인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 53%, 미국 20%,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 2%, 대만 2%, 이스라엘 1%, 기타 4%로, 한국 피해자가 과반을 넘어섬.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적용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유포협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259건, 2022년 170건,

2023년 168건, 2024년 550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신고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35.6% 증가한 964건이 신고됨(각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2만 3,107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 2023년에는 10.7%이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비율은 2024년에는 24.5%를 차지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 2. 12.).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는 350건이며,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으로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인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9. 9.).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일련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97.2%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 중 여학생은 85.9%, 남학생은 63.1%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변하며, 성치는 22.8%p임(교육부, 2024. 12. 11.). 조사한 참여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 필요한 지원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85.0%)을 가장 많이 택했으며,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71.9%)를 요청함.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발생 확인’ 22.2%, ‘부모님/양육자의 지속적 관심’ 17.8% 순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12. 1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센터에서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1,807명으로, 여성이 1,754명(97%), 남성이 53명(3%)으로 나타남. 10대 이하가 839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829명(45.9%) 순으로,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2.3%를 차지함.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범죄가 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8. 28.).

-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서 지원한 피해사례 중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는 2021년 21건, 2022년 25건, 2023년 36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95건으로 나타남. 2024년에 경기도에서 불법합성·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5%를 차지했고, 20대가 24명(25.3%), 30대 11명(11.6%) 등 순이었음(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b).

## 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정부는 긴급한 입법·행정조치를 우선 실행하며,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범부처 협업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플랫폼 규제, 피해자 지원, 처벌 등 단계별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함.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수사대응력 강화, 국제 사법 공조 강화를 주요 과제로, (2) 플랫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정함. (3)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지원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위한 R&D 및 AI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4)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예방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함(국무조정실, 2024. 11. 6.).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이 허용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진전이 있었음.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의 주체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
- 경기도는 2024년 8월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바로 8월 27일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을 31개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함.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신고 창구를 대응단으로 일원화함.
  -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진행함. 대응단은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133건의 피해를 접수했고 모니터링, 신고 및 수사의

뢰, 심리상담, 기관 연계 등 144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했고, 교육부와 연계하여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교육을 3회(9.2/9.3/9.9)에 걸쳐 진행함. 또한 12월부터 EBS 마스크트 팽수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경기도, 2024. 8. 27;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심리상담,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을 발표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 수사, 상담, 삭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자문단과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함. 교원 지원은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 행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117상담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함(경기도교육청, 2024. 9. 2.).

### 3.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

#### 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

##### 1)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약: 부다페스트협약」

- 부다페스트협약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주도하여 2001년 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임.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가입이 허용되어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등 2025년 11월 현재 총 81개국이 비준하고, 2개국 이 서명까지 한 상태임. 부다페스트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 컴퓨터 관련 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 원활한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음.

## 2) 「유엔사이버범죄협약(안)」의 전자증거 수집 규범

- 2024년 12월 24일 유엔총회 결의안 79/243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사이버범죄 협약(안)은 사이버범죄의 예방부터 처벌, 국제협력까지 전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법 틀임.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부다페스트협약의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음. 협약 제4장은 절차적인 수단과 법집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사이버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함. 제4장의 핵심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된 트래픽데이터(traffic data), 콘텐츠데이터(content data) 및 가입자정보(subscriber information)를 포함한 특정 전자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를 법적으로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3) 유럽연합의 「아동 성폭력,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방지 지침」 등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코로나 이후 AI, 딥페이크, 실시간 스트리밍 등 신기술 악용 사례가 급증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2011년 제정된 「아동 성폭력,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방지 지침(Directive 2011/93/EU)」을 2025년 6월 17일 개정하여,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공백을 해소함. 개정안은 AI·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이며 성인지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음. (1) 아동 성착취물의 정의에서 “생성 방법 무관”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현재와 미래 기술을 모두 포괄하고, (2) 위장수사, 허니팟, 통신 감청, 전자 감시 등 수사 기법을 조직범죄 수준으로 허용하며, (3) 민·형사 시효를 완전 폐지하고 (4) 아동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신고 메커니즘의 구축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성착취 대응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2022년 11월 1일 채택된 강제규범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Regulation (EU) 2022/2065, 이하 ‘DSA’)」에 따라 모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메커니즘 구축,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식별 및 제거 도구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s)’와의 협력체계를 포함하여 신고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DSA가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Facebook 비공개 그룹, Slack 채널 등은 호스팅서비스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며, 이메일, 1:1 메시징 서비스, WhatsApp, Telegram의 프라이빗 채팅은 개인 통신으로 명백히 호스팅 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AI법(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AI 시스템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경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의도(intention)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 효과만으로 충분함을 강조함. 즉, AI 시스템의 제공자/배포자가 해악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I 시스템이 조작적·기만적 기법을 배치하고 그것이 중대한 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됨. AI법의 규제대상은 AI 시스템으로, 직접 콘텐츠 삭제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조작적·기만적 딥페이크 생성 도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공급 단계”에서의 규제를 담당함.

#### 4) 미국의 「TAKE IT DOWN Act」 등

- 버지니아주는 2014년부터 비동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년 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표현물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최초의 주 중 하나가 되었음.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성표현물 규제 중 제작행위에 대한 텍사스주의 개정법에 주목할 만함. 텍사스주의 2023년 형법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 딥페이크물의 제작을 명시적으로 형사 범죄로 규정했으며, A급 경범죄, 즉 1년 이하의 구금과 \$4,0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20개 주 이상에서 유포, 생성과 마찬가지로 중범죄로 규정하였음. 몇 개 주는 시정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함. 플로리다는 2025년 상·하원 만장일치로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관한 조항을 도입함. 캘리포니아법의 딥페이크 성표현물 손해배상제도는 2025년 미연방 TAKE IT DOWN Act의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미국의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NCII) 규제는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TAKE IT DOWN Act」(Public Law. 119-12)가 발표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음. 이 법은 1) 범죄화 -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물 및 비동의 딥페이크물 유포 금지 및 2년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 2) 플랫폼의 의무 - 플랫폼의 신속 삭제(48시간 이내)·재게시 방지 의무화, 3) 집행 메커니즘 - 위반 시 형사처벌 및 FTC 행정처벌을 포함하여, 3가지 차원의 규제를 도입하여, 연방 차

원으로는 최초의 강력한 규제로 정하고 있음.

## 5) 호주의 「2021년 온라인 안전법」 등

- 호주 연방은 딥페이크 성표현물과 관련하여 2024년 9월에 1995년 형사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표현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성적 자료'의 비동의 유포 범죄로 대체하였음. 호주는 2015년 신설된 eSafety Commissioner(이하 'eSafety')와 「2015년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전문 개정한 「2021년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이하 'OSA)」을 중심으로 온라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 eSafety는 2020년 1월 최초로 발표하고 2022년 1월 개정한 '딥페이크 트렌드 및 도전 - 입장 성명(Deepfake Trends and Challenges - Position Statement)'에서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eSafety가 업계 및 사용자와 협력하여 이 접근을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음. 구체적으로 eSafety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이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및 삭제 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온라인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온라인 세계를 더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Safety는 온라인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OSA는 이를 위하여 신고 접수, 조사 권한에서부터 삭제·차단 등 통지, 미이행 사업자 공표, 게시자 개선 지도, 벌금 및 통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다수의 금전제재(civil penalty) 조항, 법원 명령 신청권 등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eSafety는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을 취함.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eSafety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유해 콘텐츠 검토 및 제거를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취하게 함.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신고 내용만으로 불법이 명백하다면 사업자에 대해 24시간 내 콘텐츠·링크 삭제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자(게시자)를 상대로도 삭제통지를 발부할 수 있음. 법령상 의무를 직접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시정통지, 삭제통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6) 국내 관련법 및 대응체계

- 성폭력처벌법을 개정(2024. 10. 16./2024. 12. 3./2024. 12. 30.)하여 반포 목적이 없

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위장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했고,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규정 마련 및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성폭력방지법을 개정(2024. 10. 16)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2024. 10. 16)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을 신설하고(11조의2),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을 허용하며(제25조의 4, 제25조의 5),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의무(제38조의2)를 신설함.
-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제7조의3),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제7조의4)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2018년부터 운영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출범하고, 13개의 지역 특화상담소와 4개의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고 밝힘. 또한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상징물(엠블럼)을 제작 및 배포함(성평등가족부, 2025. 4. 16.).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25년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정보통신 내용 중 「성폭력처벌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디지털성범죄정보(불법촬영·유포 정보, 성적 허위영상 정보), 이에 준하는 성관련 초상권 침해정보의 시정요구와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의 시정요구 등을 담당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외에 경기

도, 인천, 서울, 부산의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년 2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2년 9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이어서 개소함. 경기, 인천, 서울, 부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기관은 인천을 제외하고는 젠더폭력 관련 통합지원기관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지자체 기관은 초기접수,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들 4개 기관은 삭제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지자체 기관의 장점을 살린 피해자 동반 혹은 동행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 나.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 1)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의 방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법」 제8조는 ‘성폭력피해자등 대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공개 금지’(제8조), ‘범죄신고자등의 불이익 처우의 금지’(제5조)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내용으로는 유포와 유포불안의 영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등이 겪는 ‘2차 피해’와 ‘불이익’의 방지에 한계가 있음. 피해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주변인들의 불시 연락과 비난, 소문 등으로 지속적인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함. 특히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된 경우,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치 않는 접촉과 피해 사실 재확인, 만남 강요, 유포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12).
-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 피해영상을 시청한 주변 지인의 연락, ②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로 모르는 사람이 협박하는 경우, ③ 가족이 피해자를 닦하는 경우, ④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등, ⑤ 피해영상을 특정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 및 묘사하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85-8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학교 내 2차 피해

양상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신상 노출, ②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③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 조성, ④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는 것, ⑥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 확산 및 피해영상물 돌려보기, ⑦ 신고 접수 후 피해영상물 확인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피해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103).

## 2) '딥페이크 성범죄' 용어의 불명확성

- 최근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처음 주목을 받았던 2010년대 중반에 가해자의 시선을 전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신설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라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음.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서는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주목하여 '합성·편집'으로 불리었고, 경기도의 경우는 '합성' 방식의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강조하고자 '불법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을 특정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기존의 법률 용어인 '허위영상물' 범죄는 '가짜, 페이크'를 의미하는 '허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기술을 이용하는 합성 범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물'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폭력과 범죄가 지니는 성적 대상화와 성적 착취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음.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제작되는 성착취물 합성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며, 대중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만 범죄로 협소하게 이해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가 지닌 직관성의 장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성범죄'이라는 용어도 고려할 수 있음. 또 하나의 대안 명칭으로, 간단한 기술을 이용한 합성 및 편집물 등부터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을 포괄하여 '성적 합성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는 '원본 없는 합성물'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범망을 피하고자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본 없이 특정인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성적 이미지화하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원본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며 협박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 대안이 요구됨.

### 3) '불안피해의 대응 방안 부재

- 불안피해는 유포 불안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생성 여부에 대한 불안, 소지에 대한 불안 등도 포함될 수 있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촬영물이 없으면서도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협박에 이용되기도 함. 불안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는 불안 피해를 가중시킴. 처음 촬영물을 소지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지만,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피해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물을 가해자 본인의 기기로 옮기는 행위 등 현행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입법 또는 법 해석의 변화가 요청됨(김정혜, 2024: 189-190).

### 4)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일원화의 문제

-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출범하며,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경기, 인천, 서울, 부산)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전국적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함. 2026년부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명의 인력을 배정하기로 함. 새로 개편된 전국적인 지원체계는 지역 센터별로 지원 범위의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4개의 지역 지원기관을 제외한 다른 지역센터에는 인구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2~3명의 추가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삭제지원 담당자를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삭제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며, 피해영상물과 삭제지원 시스템을 중앙센터와 연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5)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 피해지원의 한계

- (불법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불법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에 한정하고 있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통화,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 촬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되어 게시되는 허위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불가) 피해자의 일상 사진, 개인정보와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게시물에 나란히 게시하

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편집된 게시물은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 불가능함.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인스타 등에 게시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함께 게시되어 그 피해가 다른 성적 허위영상물 합성 피해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 개정 혹은 법 해석 변화가 필요함.

- (비동의 소지죄 신설 필요) 피해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성적 허위합성물이 아니고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일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협박, 유포 이전에는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특히, 대다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적극적 동의라기 보다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의한 동의로, 그 친밀한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많은 경우 피해자는 “유포 불안” 피해를 겪게 됨. 또한, 실제로 다수의 비동의 유포 피해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해자에 의해 과거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행위로 이뤄진다고 할 때, 유포불안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불안임.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이후 비동의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는 비동의 소지죄 신설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제

### 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하 경기도 디성센터)’를 설치하여 광역 단위 기관으로서 적합한 정체성과 역할을 담아내는 ‘경기도형 모델’을 구성하여, 인천, 서울, 부산 등 후발 광역 단위 피해자 지원기관의 참조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타 지자체와 광역기관 등에 피해지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경기도 생산 자료 등을 공유하며 광역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경기도형 모델’은 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피해지원 모델’인 동시에, 대상별 대응역량강화교육과 콘텐츠 개발, 대민 홍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대응 감시단 사업으로 구성된 효과적인 ‘대응-예방모델’이기도 함. 또한 경찰, 교육청, 도내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이 협력하여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다기관 민관협력 피해자 지원모델’이기도 함.

- 2024년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면서, 경기도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민관협력, 홍보 기능을 통합대응단에 이관하고, 초기상담과 삭제 지원 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게 됨. 그 결과 예방교육, 민관협력, 홍보 등을 통해 도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도민인식 제고, 피해자지원기관의 존재에 대한 도민의 각인 등의 효과가 저하된 측면이 있음. 복합피해사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에서 통합대응단이 출발했기 때문에, 복합피해와 젠더폭력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면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초점을 두는 예방교육과 홍보가 약화되는 부수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음.
- 경기도 디성센터가 통합대응단의 산하 센터 혹은 하나의 부서로 위치지어지면서,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일원화 통보에도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 디성센터가 통합대응단 산하의 부서의 위상으로 통합되면서, 센터의 인력이 20여 명 수준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감소했고, 독자적으로 구축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정보시스템이 통합대응단으로 통합되었음. 성평등가족부의 일원화 지침 통보 상황에서, 경기도가 삭제지원 등 피해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센터 수준의 인력 수와 독자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보화 시스템, 예방교육업무, 홍보업무, 민간협력업무, 전문법률지원단, 전문심리상담단 등을 갖춘 종합적인 디지털성범죄대응기관이므로 여타의 지역특화상담소와는 다른 별도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통합대응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삭제지원 등 피해지원 업무 이외에 예방교육과 홍보 등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정도 회복하는 개편이 필요할 것임. 종합적인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기관으로서의 규모와 기능의 회복을 통해, 중앙기관의 지역센터가 아닌 '거점 센터' 정도의 명칭과 기능과 역할, 운영 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나.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재설계

-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내용과 피해를 피하기 위한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교육 대상을 잠재적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설정한 후,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러한 피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2024년 교육부의 ‘학교 디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잘못이며 범죄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의 경험률은 40.8%(가해 4.0%, 피해 21.6%, 가해와 피해 15.3%)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내용 면에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사례에 대한 이해 증진에서 초점을 전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사례 소개 후, 2차 피해의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 존중과 상호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가짜뉴스나 디페이크 성착취물 등의 허위조작정보를 구별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 능력 배양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1]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구성 예시**

2차 피해 유형	사례 내용	전달 메시지
피해영상물을 시청한 사람(지인, 모르는 사람 등)이 피해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 포함)	<p>어느 날 회사 사람이 저에게 잠깐 볼 수 있냐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p> <p>“혹시 이거 N씨 아니야?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찌다 보니 보게 됐어요. 영상 제목에 이름도 같고 여기 얼굴도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라도 하지 않겠어요?”</p> <p>오래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람이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고 제 이름과 태어난 해까지 같이 유포되어서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제 피해를 알게 되는 상황이었다고요.</p> <p>그때부터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만 와도 겁이 났고, 스마트폰 소리 자체에도 민감해져서 알람을 맞추지 않고 살았어요.</p> <p>심한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더 힘들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지인들의 연락, 직장 내 괴롭힘(소문, 퇴사 압박 등)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있음.</li> <li>- 가족, 지인, 회사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또다시 인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또 부당한 일을 겪는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li> <li>- 일반적으로 우리는 흔히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지인의 성적 영상물을 발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함.</li> <li>- 그러나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며, 다수의 사람이 영상을</li> </ul>

2차 피해 유형	사례 내용	전달 메시지
	가장 힘들었던 건 조금 나아질만 하면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이거 너 아니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냥 알고만 지내던 지인들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함. -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는 대인기피, 우울, 불안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수면, 식사, 경제활동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도 힘들어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찾아보고 소문을 내거나, 집단 따돌림 하는 행위	게다가 처음에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걸 알려준 회사 사람이 회사 내에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게 인사팀에도 들어갔어요. 그 뒤로 소문을 낸 사람은 멀쩡한데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인 저에게 회사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저를 흘깃 쳐다보는 일도 많았고, 괜찮냐고 묻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요.	-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제보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킴. - 누군가 지인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알리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조력 방법을 알아보거나 제3자 경찰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 : <a href="https://ecrm.police.go.kr">https://ecrm.police.go.kr</a>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제3자 불법 영상신고( <a href="http://www.kocsc.or.kr">http://www.kocsc.or.kr</a>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임.
피해자의 책임과 잘못으로 비난 및 압박하는 말과 행동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실직이후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오히려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런 일을 당하니?”라고 해서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감소와 2차 피해 방지 노력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변 지인, 학교, 사회 등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
유포된 개인정보를 통해 만남 등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와서 “이 영상 당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영상을 지울 수 있게 도와줄테니까 자기와 만나 달라는 일도 있었어요.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4년 사례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 p. 87-9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을 잠재적 피해자와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지 않고, 교육의 대상(청자)을 주변인으로 전제하여, 주변인이 디지털 성범죄가 잘못이고 문제라고 느끼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주변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그리고 2차 피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할 것임. 주변인 개입 모델은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라는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성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개입을 이끌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목 차

---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배경 .....	3
나. 연구목적 .....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6
3. 선행연구 .....	6
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논의 .....	6
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대응 연구 .....	9

## 제2장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15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	15
나.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24
2.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34
가. 중앙정부 및 타 광역지자체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34
나. 경기도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36

## 제3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

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 .....	43
가.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약: 부다페스트협약」 .....	43
나. 「유엔사이버범죄협약(안)」의 전자증거 수집 규범 .....	46
다. 유럽연합의 「아동 성폭력,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방지 지침」 등 .....	48

라. 미국의 「TAKE IT DOWN Act」 등 .....	56
마. 호주의 「2021년 온라인 안전법」 등 .....	64
바. 국내 관련법 및 대응체계 .....	75
<b>2.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b>	<b>86</b>
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의 방지 .....	86
나. ‘딥페이크 성범죄’ 용어의 불명확성 .....	92
다. ‘불안피해’의 대응 방안 부재 .....	94
라.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일원화의 문제 .....	95
마.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 피해지원의 한계 .....	96

## **제4장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제**

<b>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센터의 위상 재정립 .....</b>	<b>101</b>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원화 .....	101
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102
<b>2.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재설계 .....</b>	<b>105</b>
가. 디지털성범죄 알아차리기와 피해 입지 않기 중심의 예방교육 .....	106
나.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주변인 교육으로의 전환 .....	107

<b>참고문헌 .....</b>	<b>111</b>
-------------------	------------

<b>부록 .....</b>	<b>121</b>
-----------------	------------

## 표 목 차

---

[표 2-1]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 법률	15
[표 2-2] 연도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2019~2024)	18
[표 2-3]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한국여성인권진흥원)	19
[표 2-4] 유형별·연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2018~2024)	20
[표 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별 피해유형(2024)	21
[표 2-6]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2
[표 2-7] 유형별·연도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2021~2024)	23
[표 2-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별 피해유형(2024)	24
[표 2-9]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 및 발생 현황(2021~2024)	27
[표 2-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현황(2021~2024)	28
[표 2-11]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2020~2024)	28
[표 2-12]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물(허위합성물) 피해 현황(2024. 1. 1.~ 9. 6.)	29
[표 2-13]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2024)	29
[표 2-14]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현황(2018~2024)	30
[표 2-15]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현황(2020~2024):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관련	33
[표 2-16] 경기도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현황(2021~2024)	33
[표 2-17] 경기도 불법합성·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2024)	33
[표 3-1] 딥페이크에 대한 유럽 규범의 다층적 규제 체계	56
[표 3-2] 캘리포니아의 손해배상 제도	59
[표 3-3]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법정 이행 도구	71
[표 3-4]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2024. 10. 16.)	76
[표 3-5]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77
[표 3-6]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불이익' 관련 법령	87
[표 3-7] 행위자별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의 대표적 유형	90
[표 3-8] 학교 내 2차 피해 양상(한국여성인권진흥원)	91

[표 3-9]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사 용어 .....	93
[표 4-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주요 내용 .....	107
[표 4-2]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구성 예시 .....	108

## 그림 목 차

---

[그림 2-1]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의 피해자 성별 및 국적(SEcurity HERO) ...	25
[그림 2-2]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의 피해자 성별 및 국적(Deeptrace) .....	26
[그림 2-3]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주요 사례 .....	27
[그림 2-4]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 (교육부) .....	31
[그림 2-5]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 (교육부) .....	31
[그림 2-6] 딥페이크 성적 불법영상물 피해 관련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 (교육부) ...	32
[그림 2-7]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통합지원추진체계 .....	37
[그림 2-8]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조치(2024) .....	38
[그림 2-9] 딥페이크 성범죄 초기대응지침 다국어 카드뉴스(7개 국어) .....	38
[그림 2-10] 경기도교육청 불법 합성물 피해 학생 및 교원 원스톱 지원체계 및 내용 ...	39
[그림 3-1]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처리 흐름 .....	68
[그림 3-2] 성평등가족부 조직도 .....	79
[그림 3-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	80
[그림 3-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경기도 남부경찰청 조직도 .....	82
[그림 3-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접수 및 처리절차 .....	83
[그림 3-6]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내용 .....	84
[그림 3-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원스톱 통합지원 내용 .....	84
[그림 3-8]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지원 내용 .....	85
[그림 3-9]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지원 내용 .....	86





# I

---

##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가. 연구배경

- 2024년 상반기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8월의 ‘인하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초중등 학교의 학생 집단 사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혹은 불법 합성물 제작·반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주목받음. 과거에도 꾸준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대상이 주로 K-POP 여성아이돌 연예인과 유명인, 해외 연예인과 스포츠인 등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에 집중되며 사회적 관심에서 비켜 갔음. 또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실제 성폭력 피해보다는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도 소극적이었으며, 수사중지 비율이 38.2%, 집행유예 선고율이 40%로 사법기관의 대응도 매우 소극적이었음<sup>1)</sup>. 사법기관에서의 대응이 소극적이면서 피해자는 “어차피 가해자를 잡지도 못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피해 신고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 소극적인 사법적 대응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며, 운이 없어 잡혀도 처벌이 약하다”고 확신하며 범죄 의식 없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범죄를 지속해왔음.
- 그러나 2024년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연예산업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아동·청소년, 대학생, 군인, 성인 일반인 등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배덕(背德) 문화’의 확산<sup>2)</sup>이 확인되었음.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예방교육과 사회적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 대한 2023년 기준 수사중지 비율은 약 38.2%이며, 3년 동안(‘21~’23) 평균적으로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10건 중 3.2건이 수사중지됨. 이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중지 비율과 비교해도 거의 4배 이상 높음.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전체 수사중지비율은 약 10.9%인데 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사중지비율은 약 38.2%임(김민지, 2024: 15). 또한 대법원을 통해 4년간(2020. 6. 25. ~ 2024. 6. 30.) 딥페이크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받은 판결 중 40%가 집행유예가 선고됨.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 징역형 24명(27.5%), 벌금형 14명(16%), 선고유예 2명(2.2%), 무죄 2명(2.2%)으로 나타남(김남희 의원실, 2024. 9. 4.; 김정화, 2024. 9. 4.).

2) 딥페이크 성착취가 발생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배덕감’을 느끼기 위해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대화가 자주 목격된다고 함. 대학동문들 사진 등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의 주범도 배덕감을 느끼고자 범행했다고 함(염건웅, 2024: 48).

인식개선에 있어서 도덕적, 합리적, 비판적 판단 능력의 배양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며 부랴부랴 종합적 차원의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TF를 구성하며, 입법적 조치와 대대적인 집중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조치 등을 쏟아 내기 시작함.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 수준에서도 피해접수와 피해자 지원, 예방 조치 등이 이뤄졌음. 정부는 2개월 동안 긴급한 입법·행정조치를 우선 실행하며,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불법 계엄 및 탄핵, 정권교체 등으로 이어진 급격한 국내 환경의 변화로, 답페이크 성범죄 관련 이슈는 다시 수면으로 가라앉고 있음.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되었던 경찰청의 답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도 올해 3월에 끝났으나, 단속의 종합적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하나 나오지 않은 채, 답페이크 성범죄 이슈는 슬며시 자취를 감추고 있음.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 승인이 허용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답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진전이 있었음. 또한 답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의 주체에 지자체가 포함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 하지만 답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그리고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답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답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된 이슈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중앙정부의 답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답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피해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 가야 할 것임.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관련 분야의 정책과 실행을 선도해 왔음. 성착취물의 삭제지원과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원,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대응예방교육 프로그램

램을 갖추고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예방교육을 해왔음. 2024년의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음. 따라서 경기도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윈스톱 지원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피해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물적, 인적 인프라 확대와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24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법적, 행정적 조치의 진전 과정과 법적, 제도적 측면의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의 피해지원과 예방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지원과 예방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법적, 제도적 실제와 한계를 분석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 2장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현황과 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정을 분석하여, 대응에서의 제도적, 실제적 한계를 도출함.
- 3장에서는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하여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 의견 조사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4장 결론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제도적, 실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3장에서 도출된 국내외 법과 정책의 시사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경기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함.

## 나. 연구 방법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 제안을 하고자, 국내외에서 발전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와 정책,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문헌 연구와 피해 대응 관련 공공 및 민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함.
  - (문헌연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을 검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사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공공 민간 전문가 간담회) 민·관·학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한계, 경기도의 대응 개선 방향,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 딥페이크 관련 전문가, 젠더폭력 분야 연구자, 젠더폭력 분야 전문법조인, 피해지원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와 서면자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피해대응 현황 및 대응 노력을 확인하고, 예방과 피해지원 분야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3. 선행연구

### 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논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연구』(2024)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와 플랫폼 등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정필운, 지성우, 엄주희, 2024).
  -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법률과 행정명령 등을 도입하여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정책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에 대한 표시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딥페이크 성폭력물의 금지 목록 지정 등을 실시하고 있음(정필운, 지성우, 엄주희, 2024: 15-62).
  - 주요 국가와 해외 플랫폼의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부과 제도 마련, (2) 타인의 인격권 혹은 공익을 침해한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 마련, (3) 임시조치제도의 보완 및 금지명령제도의

- 도입<sup>3)</sup>, (4) 플랫폼 사업자,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 언론중재 등 사법적 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5) 플랫폼 사업자의 조건부 강제적 자율구제의 입법화 등을 제안함(정필운, 지성우, 엄주희, 2024: 100-124).
- 최진웅은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역 등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종합적 차원에서 딥페이크에 관한 규제 문제를 다룸. 이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함(최진웅, 2024a).
    - 딥페이크 관련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 대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법 차원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없으며, 개별주법에서는 공직선거, 디지털성범죄, 초상권 관련한 딥페이크 정보의 제작과 유통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 규정이 없음. 유럽연합은 딥페이크 정보에 대한 식별조치 및 유통방지 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규제함. 영국은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성범죄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정보 유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딥페이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호주 역시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정보 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온라인안전법」의 온라인 폭력이나 혐오폭력 규정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조치 의무를 규정함.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딥페이크로 생성한 불법정보, 유해정보, 허위정보 발견 시 조치 후 관계부서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하며, 법외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가중처벌함(최진웅, 2024a: 5-10).
    - 딥페이크 관련 국내 입법적 시사점으로, (1) 딥페이크 범죄의 위법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 (2) 딥페이크 형사처벌의 경우 면책규정 및 법적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률 적용 및 집행의 탄력성 확보, (3)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에 한정하기보다는 딥페이크 불법정보 일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검토, (4) 역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수단 마련 등을 제시함(최진웅, 2024a: 11-13).
  - 강준모는 해외 주요국 및 국내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물과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동향의 검토를 통해 국내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강준모, 2024b).
- 3)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 정보를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제44조의3)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잘 이행하면 민사 책임을 조건부로 면제하여,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임시조치를 이행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또한 부작위를 명하는 금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을 도입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시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신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정필운, 지성우, 엄주희, 2024: 112-114).

- 미국정부는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반면, 주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규제 입법을 제정하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는 딥페이크로 생성한 성착취물과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규제하며, 딥페이크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음. 또한 뉴저지주 등 12개주는 콘텐츠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였음.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과 「인공지능법」에 근거하여 플랫폼 사업자, 딥페이크 시스템의 공급자, 사용자 모두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프랑스는 선거와 관련되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독일의 연방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주법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음(강준모, 2024b: 6-13).
- 이러한 해외 규제 사례를 참조하며, 국내 딥페이크 관련 규제의 방향으로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의무를 부과하며, 자율규제를 넘어 허위조작정보의 배포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2) 정보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정책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음(강준모, 2024b: 16).
- 류부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확산 저지와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외의 법제 사례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류부곤, 2024).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방법의 확대인 온라인 수색제도<sup>4)</sup>의 해외 사례로,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조직범죄에 대한 특수수사의 한 방법으로 ‘컴퓨터 데이터 캡처’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에서 ‘장비침입’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수색을 법제화하였음. 미국은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네트워크 수사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 ‘온라인 수색’ 규정을 두고 중대범죄의 시도나 실행에 적용하고 있음(류부곤, 2024: 39-44).
-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해외 사례로, 호주는 온라인안전법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신원정보, 연락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된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류부곤, 2024: 46-48).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1)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색이나 함

4) 온라인 수색이란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IT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대상시스템의 이용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중요한 저장매체의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류부곤, 2024: 39).

- 정수사 등 새로운 범죄수사방법의 도입 검토, (2) 정보통신제공자의 피해 게시물 게시자의 정보 제공의 의무 규정, (3) 통신사업자의 조치 의무 강화, (4) 잠정조치 도입 등을 제안함(류부근, 2024).
- 정경환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법적 보호법익을 재확립하고 피해자 보호와 형벌 남용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춘 입법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정경환, 2025).
    - 딥페이크 성범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개정됨. 제14조의2에서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법정형도 상향하였음. 제14조의3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은 ‘표현의 자유 vs.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 충돌 논쟁과 책임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문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는 것임(정경환, 2025).
    - 피해자 보호와 형벌 남용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 인공지능 합성기술(딥페이크 기술)은 사용자의 창작 욕구를 실현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 국가가 법적, 정책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표현의 남용’ 영역을 세심하게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문구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를 들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성요건에서 성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합성의 범위와 기준, 피해자의 특정성 유무, 고의 및 영리목적 등 세심한 판단기준을 규정해야 하며, 통상 여러 단계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가 개입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경우 행위자별 고의 및 과실의 책임수준을 파악하는 부분 등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 (3) 또한 영상 삭제지원, 신속한 차단 시스템, 재판 전후 심리상담 등 비형벌적 수단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임(정경환, 2025).

## 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대응 연구

- 한민경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허위영상물<sup>5)</sup>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성적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한

5)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을 규제대상의 조건으로 규정함.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영상’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의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규제대상의 조건을 규정함(한민경, 2024).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한민경, 2024).

-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조항이 신설된 이후, 동조 적용이 검토된 제1심 판결문 124건, 피고인 12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실태를 분석함. (1)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는 서로 알지 못하는 복수의 가해자가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하는 행위를 분담하는 형태로 발생함. 이들은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허위 제작한 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구분됨. 피고인은 모두 남성이고, 피해자는 남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임.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피고인의 48.8%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22%만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며, 둘째,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가 피고인의 위죄 성립에 결정적이었음. 매우 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 셋째, 피고인들이 고도의 첨단기술(딥페이크 기술)로 교묘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자신의 정액 등 채액을 묻히거나 편집이 조잡한 허위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보다는 허위영상물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포괄하여 처벌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함(한민경, 2024: 69-77).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향성으로,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라는 보호법익을 명확히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한민경, 2024: 78-79).
- 조혜민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범죄행위, 재판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대응의 강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함(조혜민, 2025).
  -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판결문에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년 가해자일 경우 참작 사유가 언급되는 것으로 확인해 보면 가해자 중 10대는 15.9%, 10대 피해자가 42.4%, 20대 피해자가 31.8%였음. 152건 중 남성피해자는 2건, 여성피해자는 150건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지인(동창 등) 40.3%, 친밀한 관계(전 애인, 애인) 6.9%, 연예인 25.8%임. 이처럼 여성 지인과 여성 연예인이 범행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친밀성’ 개념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함(조혜민, 2025: 13-15).
  - 둘째,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은 텔레그램 그룹방을 운영·관리, 합성물을 제작하여 제공·판매, 합성물을 요청, 합성물을 이용하는 4가지 양식으로 이루어짐. 범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피해자 이미지 수집방식, 합성물 제작 방식, 합성물 이용 실태,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이미지 수집 방식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와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수집한 경우 13.8%, 호텔 로그인 계정을 이용

- 하거나 불법촬영,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4.4%,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이미지를 준 경우 1.9%임. (2) 합성물 제작 방식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13.8%,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 8.8%, 텔레그램 봇 계정 이용 1.3%, SNS나 텔레그램에 합성물 제작 의뢰 22.6%로, 합성물 제작이 보편화되어 기술적 차원의 규제만으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3) 합성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합성물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반포하는 경우 35.2%, 홈페이지나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경우 28.3%,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협박하는 경우 9.4%로 나타남. (4) 텔레그램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18.2%가 텔레그램 단체방의 운영자 혹은 부관리자로 확인됨. 가해자들이 합성물 공유 단체방을 운영하거나 동시에 다른 단체방에 접속하는 링크를 모아 둔 방을 운영하기도 함. 운영방식을 상의하는 방, 여타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방을 따로 운영하기도 함(조혜민, 2025: 16-20).
- 셋째, 가해자의 형량을 살펴보면, 실형이 42.8%, 집행유예 47.2%, 벌금형 6.9%, 무죄 및 선고유예가 3.1%임. 전체 가해자 중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아 댁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음을 확인함(조혜민, 2025: 16-20).
  - 연구를 통해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로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규모가 크고 다양하였음. 전체 가해자 중 88.7%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았으나, 모든 댁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았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의도, 합성물의 남용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임. 집행유예율이 47.2%인 것을 보았을 때, 양형 사유로 피해자 요인보다 가해자의 초범 여부 등이 더 고려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부분은 향후 형사사법체계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음(조혜민, 2025: 23-24).
- 김수아는 댁페이크 성범죄의 대응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댁페이크 성범죄를 하나의 특정한 범죄유형으로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온라인 괴롭힘을 기초로 한 댁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폭력의 문제를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댁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여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에 기초한 폭력이자 젠더 구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을 주장함(김수아, 2023; 2024).
  - 전운정은 댁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과 양상은 계속 진화하지만 피해지원 체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인력 및 예산 등 물리적 한계, 피해영상물의 높은 미삭제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역외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제 수사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

적인 실태조사와 별도의 통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함. 또한 구상권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삭제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전운정, 2024).

- 김여라는 딥페이크 사건 등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안전 문제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과의존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친구 사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사이버폭력의 위협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sup>6)</sup>에 달함.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가칭)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김여라, 2024).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행한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로, 가해가 4.0%, 피해 21.6%, 가해와 피해 모두는 15.3%로 나타남.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을 말함(김여라, 2024).



## II

---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

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경찰청 범죄통계 구분에 따르면, 성폭속범죄의 일부 유형을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는 형법 제243조,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작/배포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제11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근거하고 있음.

**[표 2-1]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 법률**

디지털 성범죄 유형	관련 법령	내용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형법 제243조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화,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b>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b> 에 처한다.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제44조의7(불법정보의유통금지 등)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 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디지털 성범죄 유형	관련 법령	내용
		<p>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b>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b>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b>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b>5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b>1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b>5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p>

디지털 성범죄 유형	관련 법령	내용
		<p>라 한다)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p>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b>1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최종검색일: 2025. 11. 3.)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은 2022년 최고점을 찍으며,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 성착취 영상등의 유포 범죄(음란물 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는 증가 추세임.
- 2024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는 통신매체음란이 5,858건(37.3%)으로 가장 많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이 5,829건(37.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2,351건(15.0%),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등이 823건(5.2%),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550건(3.5%), 음란물 유포 265건(1.7%) 등 순이었음.
- 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는 통신매체음란이 1,551건(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이 1,421건(33.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701건(16.5%),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등 288건(6.8%),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80건(4.3%), 음란물 유포 83건(2.0%) 등 순으로 나타남.

[표 2-2] 연도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2019~2024)

(단위: 건, %)

구분	합계	음화등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등 이용협박· 강요등	
2019	전국	9,430 (100.0)	12 (0.1)	1,482 (15.7)	5,764 (61.1)	1,437 (15.2)	735 (7.8)	-	
	경기도	2,110 (100.0)	4 (0.2)	336 (15.9)	1,317 (62.4)	325 (15.4)	128 (6.1)	-	
2020	전국	11,128 (100.0)	19 (0.2)	1,409 (12.7)	4,881 (43.9)	2,047 (18.4)	2,621 (23.6)	31 (0.3)	120 (1.1)
	경기도	3,074 (100.0)	12 (0.4)	398 (12.9)	1,384 (45.0)	534 (17.4)	701 (22.8)	7 (0.2)	38 (1.2)
2021	전국	13,844 (100.0)	10 (0.1)	793 (5.7)	5,541 (40.0)	5,067 (36.6)	1,628 (11.8)	259 (1.9)	546 (3.9)
	경기도	3,634 (100.0)	2 (0.1)	221 (6.1)	1,354 (37.3)	1,369 (37.7)	460 (12.7)	66 (1.8)	162 (4.5)
2022	전국	19,641 (100.0)	15 (0.1)	598 (3.0)	5,876 (29.9)	10,563 (53.8)	1,598 (8.1)	170 (0.9)	821 (4.2)
	경기도	5,149 (100.0)	4 (0.1)	154 (3.0)	1,398 (27.2)	2,807 (54.5)	423 (8.2)	50 (1.0)	313 (6.1)
2023	전국	16,685 (100.0)	13 (0.7)	366 (2.2)	5,490 (32.9)	8,004 (47.9)	1,674 (10.0)	168 (1.0)	970 (5.8)
	경기도	4,664 (100.0)	5 (0.1)	117 (2.5)	1,364 (29.3)	2,102 (45.1)	525 (11.3)	46 (1.0)	395 (8.5)
2024	전국	15,688 (100.0)	12 (0.1)	265 (1.7)	5,829 (37.2)	5,858 (37.3)	2,351 (15.0)	550 (3.5)	823 (5.2)
	경기도	4,227 (100.0)	3 (0.1)	83 (2.0)	1,421 (33.6)	1,551 (36.7)	701 (16.5)	180 (4.3)	288 (6.8)

출처: 통계청(각년도), 「경찰청범죄통계」; 심선희(2024), 범죄통계 속의 성폭력, 통계인사이트 6호.

- 법적인 범죄로 처벌하는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피해 지원을 위해 분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차이가 있으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을 피해자 관점에서 불법촬영, 합성·편집,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18). 유포불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으나,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음. 다만 유포불안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볼 수 있음.

**[표 2-3]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유형	관련 법령	예시
불법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li> <li>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경우</li> <li>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li> </ul>
합성·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 등</li> </ul>
비동의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li> <li>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li> <li>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li> <li>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li> </ul>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li> <li>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제1항,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li> </ul>
유포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li> </ul>
사이버 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li> <li>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li> <li>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li> </ul>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표 2-4] 참조). 2024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기타 1,421건(8.4%), 합성 및 편집(딥페이크) 1,384건(8.2%) 순이었음.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의 분포는 2023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합성 및 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961건 증가(227.2%)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표 2-4] 유형별·연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2018~2024)**

(단위: 건, %)

구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2022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2023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2024	16,833 (100.0)	4,182 (24.9)	1,384 (8.2)	2,890 (17.2)	2,244 (13.3)	4,358 (25.9)	354 (2.1)	1,421 (8.4)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49.

주: 피해유형 중 기타는 SNS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에 속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24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연령대와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0대 피해자가 5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 피해자가 27.8%로, 10대와 20대의 피해가 78.7%임. 피해유형별로 20대 피해자가 10대 피해자의 2배 정도의 피해를 경험했지만, 합성 및 편집(답페이크 성범죄) 피해 유형의 경우는 10대와 20대의 피해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임.

[표 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별 피해유형(2024)

(단위: 명, 건, %)

연령대	피해자 (명)	피해유형(건)							
		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10대미만	11	19 (0.1)	10 (0.2)	1 (0.1)	0 (0.0)	3 (0.1)	5 (0.1)	0 (0.0)	0 (0.0)
10대	2,863	4,952 (29.4)	1,229 (31.1)	640 (46.2)	601 (20.8)	622 (27.7)	1,347 (30.9)	126 (35.6)	317 (22.3)
20대	5,242	8,085 (48.0)	2,259 (54.0)	642 (46.4)	1,341 (46.4)	1,024 (45.6)	1,916 (44.0)	162 (45.8)	741 (52.1)
30대	1,331	2,291 (13.6)	330 (7.9)	74 (5.3)	633 (21.9)	309 (13.8)	705 (16.2)	46 (13.0)	194 (13.7)
40대	454	841 (5.0)	142 (3.4)	16 (1.2)	175 (6.0)	158 (7.1)	251 (5.8)	11 (3.1)	88 (6.2)
50대이상	261	469 (2.8)	98 (2.3)	9 (0.7)	54 (1.9)	108 (4.8)	120 (2.7)	6 (1.7)	74 (5.2)
연령미상	143	176 (1.1)	44 (1.1)	2 (0.1)	86 (3.0)	20 (0.9)	14 (0.3)	3 (0.8)	7 (0.5)
합계	10,305	16,833 (100.0)	4,182 (100.0)	1,384 (100.0)	2,890 (100.0)	2,244 (100.0)	4,358 (100.0)	354 (100.0)	1,421 (100.0)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19.

주: 피해유형 중 기타는 SNS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 해당 유형에 속함.

-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2024년, 2025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 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대여·유포·소지·광고하는 등의 행위
  - 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마.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을 불법촬영, 유포, 유포불안, 유포협박,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몸캠 피싱), 불법합성, 불법도용의 9가지로 분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025; 2023). 유포불안은 관련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6개의 피해유형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몸캠 피싱), 불법도용의 3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음.

**[표 2-6]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피해유형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시
불법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li> <li>·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가 성적 대상으로 촬영된 경우</li> </ul>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li> <li>·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재)유포된 경우</li> </ul>
유포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영상물의 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유포 가능성으로 불안한 경우</li> </ul>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li> <li>·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제1항,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영상물(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는 경우</li> </ul>
온라인 그루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li> <li>·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li> <li>·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li> <li>·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항, 제5항</li> <li>·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에서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대화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요구받는 행위</li> </ul>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li> <li>·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항, 제5항</li> <li>·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li> <li>· 형법 제307조(명예훼손)</li> <li>· 형법 제311조(모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li> </ul>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 (몸캠 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li>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채팅 과정에서 촬영 또는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li> </ul>
불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li> <li>· 형법 제307조(명예훼손)</li> <li>· 형법 제311조(모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li> </ul>

피해유형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시
불법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하위영상물 등의 반포등)</li> <li>· 형법 제307조(명예훼손)</li> <li>· 형법 제311조(모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li> </ul>

자료: 경기도센터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보고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2023),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센터폭력통합대응단 홈페이지(검색일: 2025. 11. 3.)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2024년 피해 유형 중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으로 나타남.

[표 2-7] 유형별·연도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2021~2024)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 촬영	유포	유포 불안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 (몸캠 피싱)	불법합성 및 도용 (딥페이크)	기타
2021	777 (100.0)	131 (16.9)	110 (14.2)	246 (31.7)	62 (8.0)	46 (5.9)	73 (9.4)	30 (3.9)	21 (2.7)	58 (7.5)
2022	764 (100.0)	131 (17.1)	88 (11.5)	255 (33.4)	91 (11.9)	35 (4.6)	41 (5.4)	37 (4.8)	25 (3.3)	61 (8.0)
2023	709 (100.0)	79 (11.1)	116 (16.4)	217 (30.6)	84 (11.8)	36 (5.1)	31 (4.4)	57 (8.0)	36 (5.1)	53 (7.5)
2024	1,451 (100.0)	198 (13.6)	248 (17.1)	447 (30.8)	129 (8.9)	87 (6.0)	93 (6.4)	42 (2.9)	95 (6.5)	112 (7.7)

자료: 경기도센터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p.20.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4년 접수된 피해자는 10대가 48.0%, 20대가 25.5%로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3.5%를 차지함. 10대와 20대 피해자는 유포불안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포 피해가 많았음.

[표 2-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별 피해유형(2024)

(단위: 명, 건, %)

연령대	피해자 (명)	피해 유형(건)									
		계	불법 촬영	유포	유포 불안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 (몸캠 피싱)	불법합성 및 도용 (딥페 이크)	기타
10대 미만	1	3 (10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10대	190	637 (100.0)	49 (7.7)	98 (15.4)	201 (31.6)	60 (9.4)	79 (12.4)	43 (6.8)	11 (1.7)	49 (7.7)	47 (7.4)
20대	101	412 (100.0)	77 (18.6)	81 (19.6)	125 (30.3)	31 (7.5)	7 (1.7)	17 (4.1)	17 (4.1)	24 (5.8)	33 (8.0)
30대	38	167 (100.0)	29 (17.4)	32 (19.2)	49 (29.3)	12 (7.2)	1 (0.6)	12 (7.2)	3 (1.8)	11 (6.6)	18 (10.8)
40대	14	82 (100.0)	17 (20.7)	13 (15.9)	23 (28.0)	7 (8.5)	0 (0.0)	6 (7.3)	3 (3.7)	6 (7.3)	7 (8.5)
50대	14	72 (100.0)	12 (16.7)	11 (15.3)	22 (30.6)	11 (15.3)	0 (0.0)	4 (5.6)	7 (9.7)	1 (1.4)	4 (5.6)
미상	38	78 (100.0)	14 (17.9)	12 (15.4)	26 (33.3)	8 (10.3)	0 (0.0)	10 (12.8)	1 (1.3)	4 (5.1)	3 (3.8)
합계	396	1,451 (100.0)	248 (13.6)	248 (17.1)	447 (30.8)	129 (8.9)	87 (6.0)	93 (6.4)	42 (2.9)	95 (6.5)	112 (7.7)

자료: 경기도센터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p.15; p.23.

## 나.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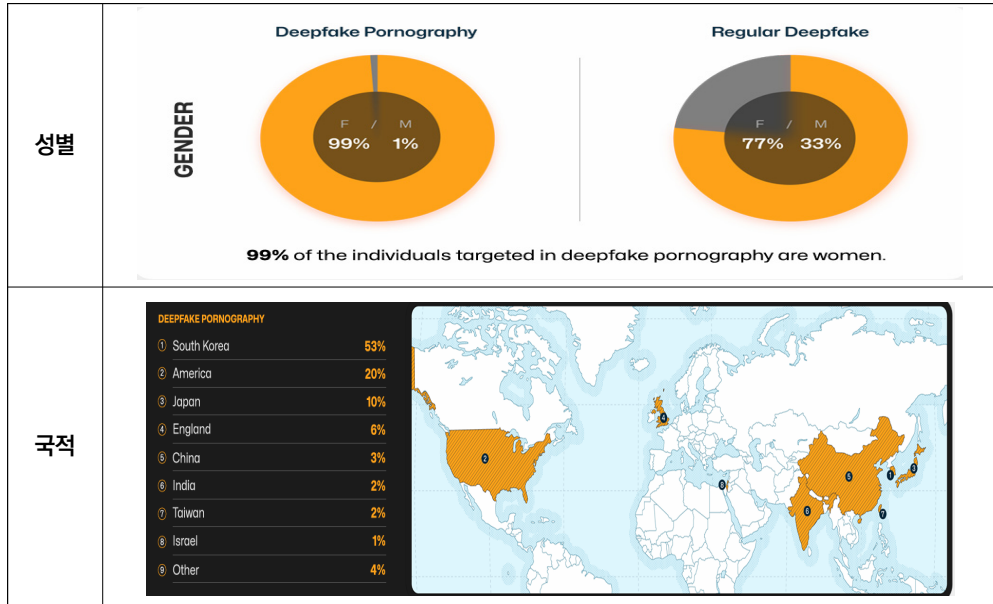
### 1) 세계적 피해 현황

-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SEcurity HER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라인에서 확인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이며, 상위 10개의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통된 딥페이크 포르노물은 3억 364만 207건 임. 2023년에 생성된 딥페이크 포르노물은 2만 1,019건으로 2022년 3,725건에 비해 464% 증가함. 딥페이크 포르노물의 피해자는 여성이 99%, 남성이 1%인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 53%, 미국 20%,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 2%, 대만 2%, 이스라엘 1%, 기타 4%로, 한국 피해자가 과반을 넘어섬. 딥페이크

포르노물에서 특정된 피해자의 94%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종사자로, 딥페이크 포르노물의 상위 10위권에 한국 가수가 82.6%를 차지함(시큐리티 히어로 홈페이지).

[그림 2-1]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의 피해자 성별 및 국적(SEcurity HERO)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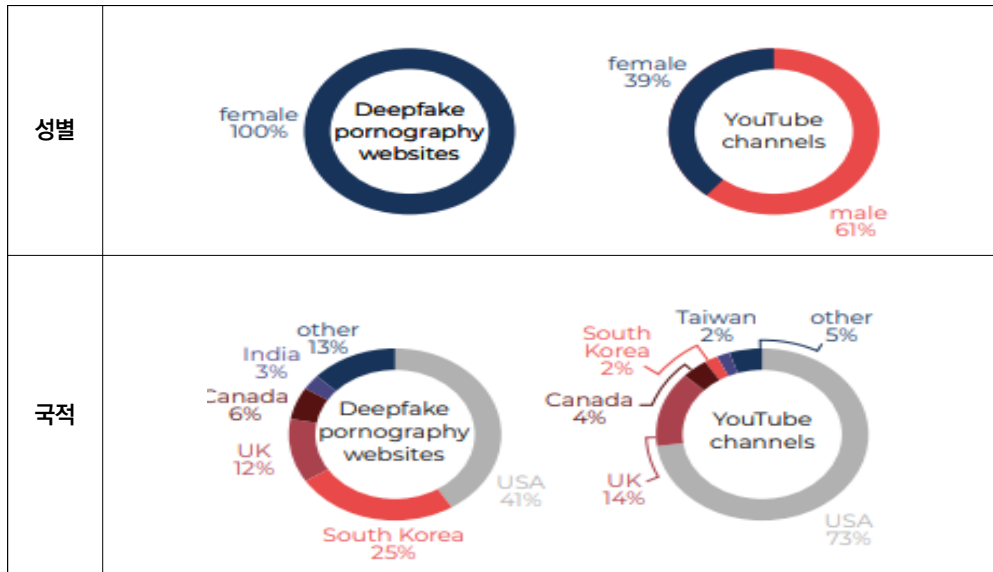


자료: SECURITY HERO(2023), 2023 STATE OF DEEPPAKE: Realities, Threats, and Impact.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최종검색일: 2025. 9. 3.)

-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온라인에서 확인된 딥페이크 영상물은 1만 4,678건이며, 이 중 포르노 영상물(성착취물)의 비율이 96%이며, 상위 4개의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에 1억 3,436만 4,438건이 유통되었음. 상위 5개의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상위 14개의 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에 유통된 딥페이크 영상물의 성별, 국적별,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포르노물의 피해자는 100%가 여성이며, 한국 피해자는 25%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종사자가 피해자의 99%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포르노물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자는 남성이 61%, 여성 39%인 것으로 나타남(Deeptrace, 2019).

[그림 2-2] 딥페이크 포르노물(성착취물)의 피해자 성별 및 국적(DeeTrace)

(단위: %)



자료: DeeTrace(2019). The State of Deepfakes: landscape, threats, and impact. <https://www.deepracetech.com/>(최종검색일: 2025. 9. 3.)

## 2) 국내 피해 현황

- 2024년 서울대, 인하대 등 대학가 딥페이크 사건과 중고생 집단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를 계기로, 과거 K-POP 여성 아이돌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형태로 인식되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아동·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일반인으로 확대되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
- 일명 ‘서울대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2명이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000여 개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텔레그램 그룹방에 배포한 사건임. 피해 여성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함(중앙일보, 2024. 10. 30.).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인하대 졸업생을 포함하여 남성 15명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하대 여학생 1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90여 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270여 회 유포한 사건임.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허위 등록증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함(이데일리, 2025. 4. 2.). 또한 전국 70여 개 대학 이름이 붙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단체방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기도 함(매

일경제, 2024. 10. 11.). 2024년 8월 2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초·중등학교 명단이 공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한겨레, 2024. 9. 2.).

[그림 2-3]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주요 사례

서울대n번방 사건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목록 공개 보도
		

자료: jtbc뉴스. (2024. 5. 21.). 내 사진이 왜 여기에..서울대 'N번방' 터졌다(최종검색일: 2025. 9. 9.); 이데일리. (2025. 4. 2.). '인하대 여학생' 딥페이크 영상제작·유포한 男 15명 검거(최종검색일: 2025. 9. 9.); 한겨레. (2024. 9. 2.). 딥페이크 피해, 학교로 확산...교사노조 "국가 차원 신고 받아야"(최종검색일: 2025. 9. 9.).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적용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유포협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259건, 2022년 170건, 2023년 168건, 2024년 550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신고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35.6% 증가한 964건이 신고됨(각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표 2-9]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 및 발생 현황(2021~2024)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신고	156	160	180	964
발생	259	170	168	550

주: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연말 기준이며, 신고 건수는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 경찰청이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총 964건 접수하였고, 피의자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였음. 피의자 중 10대는 411명(축법 78명)으로 81.2%를 차지하며, 20대 77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을 검거함(경찰청, 2024. 10. 30.).

**[표 2-10] 답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현황(2021~2024)**

(단위: 건,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피의자	78	85	120	506
10대 피의자	51	52	91	411
10대 피의자 비율	65.4%	61.2%	75.8%	81.2%

주: 2024년 피의자 수, 10대 피의자 수 및 10대 피의자 비율은 2024년 10월 25일 기준임.

자료: 경찰청(2024. 8. 27.). 답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2024. 10. 30.). 답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의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2만 3,107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 2023년에는 10.7%이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비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비율은 2024년에는 24.5%를 차지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 2. 12.).

**[표 2-11]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2020~2024)**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허위영상물)	473	1,913	3,574	7,187	23,107
디지털성범죄 정보	35,550	25,879	54,994	66,929	94,185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5. 2. 12.). ‘답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3.2배 급증.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답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되는 350건이며,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으로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인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9. 9.).

[표 2-12]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물(허위합성물) 피해 현황(2024. 1. 1.~ 9. 6.)

(단위: 건, 명)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 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 등
누적합계 (1.1.~9.6.)	434	12	179	243	350	11	151	188	184	617	588	27	2
1차조사 (8.27.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조사 (9.6.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자료: 교육부(2024. 9. 9.).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센터에서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1,807명으로, 여성이 1,754명(97%), 남성이 53명(3%)으로 나타남. 10대 이하가 839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829명(45.9%) 순으로,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2.3%를 차지함.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범죄가 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8. 28.).

[표 2-13]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연령미상
여성	1,754	819	809	106	16	2	2
남성	53	20	20	4	2	7	0
소계	1,807	839	829	110	18	9	2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8. 28.). 지난 1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AI기반 대응체계 본격 추진.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유형 중 합성·편집(딥페이크 등)은 총 2,757건임. 2018년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3.0%였던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는 2024년에는 1,384건으로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8.2%를 차지하며 급속히 증가함(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표 2-14]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현황(2018~2024)**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성·편집 (딥페이크 등)	69 (3.0%)	144 (3.5%)	349 (5.0%)	176 (1.7%)	212 (1.7%)	423 (2.9%)	1,384 (8.2%)
전체 디지털성범죄	2,289	4,114	6,983	10,353	12,727	14,565	16,833

주: 괄호의 내용은 각년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비 합성·편집 피해의 비율임.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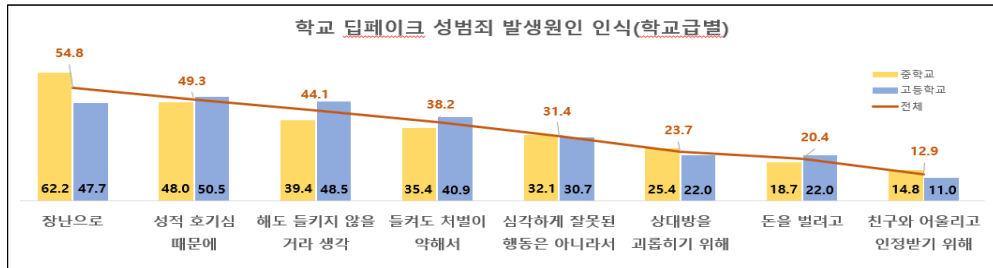
### 3)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청소년 피·가해 경험 및 인식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sup>7)</sup>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일련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97.2%가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 중 여학생은 85.9%, 남학생은 63.1%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하면서, 성차는 22.8%p임(교육부, 2024. 12. 11.).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따른 불안감의 이유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가 76.0%, ‘내가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45.4%,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29.7%, ‘학교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25.8% 등의 순이었음(교육부, 2024. 12. 11.).
-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물을 본 경험은 응답자의 4.7%이며, 자신의 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한 번이라도 입은 경험은 2.8%였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보게 된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52.5%, ‘동영상 공유 플랫폼’ 29.7%, ‘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여줘서’ 10.9%,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8.9%, ‘익명 SNS방’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12. 11.).
-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장난으로’ 54.8%,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 44.1%,

7)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는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 1,052명, 고 1,093명)을 대상으로 2024. 11. 5. ~ 11. 27.(3주) 동안 웹/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함. 조사 내용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청소년 인식,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등임(교육부, 2024. 12. 1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23.7%, ‘돈을 벌려고’ 20.4%,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 12.9% 순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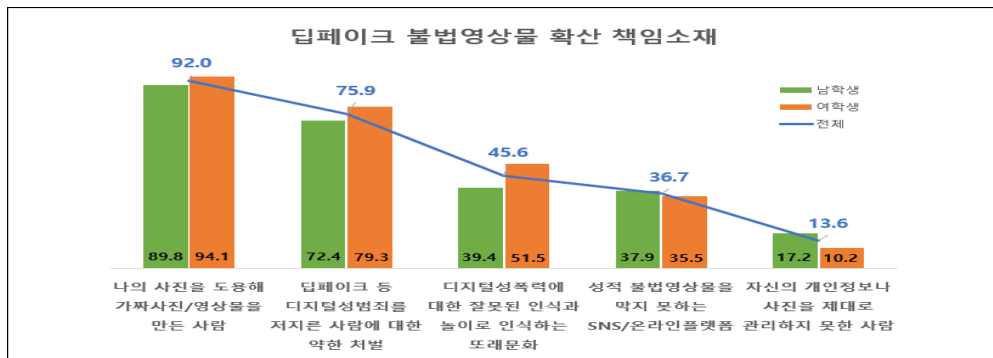
[그림 2-4]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 (교육부)



자료: 교육부(2024. 12. 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약한 처벌’ 75.9%,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놀이로 인식하는 또래문화’ 45.6%, ‘성적 허위영상물을 막지 못하는 SNS 및 온라인 플랫폼’ 36.7%, ‘자신의 개인정보/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 13.6% 순으로 나타남. 즉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13.6%인 것으로 나타남.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음(교육부, 2024.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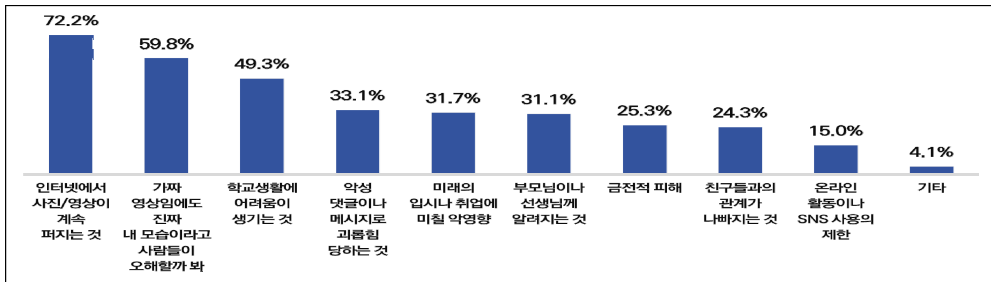
[그림 2-5]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 (교육부)



자료: 교육부(2024. 12. 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적 불법영상물 피해 관련하여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 72.2%, ‘가짜영상임에도 진짜 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59.8%,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49.3%, ‘악성댓글이나 메시지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33.1%, ‘미래의 입시/취업에 미칠 악영향’ 31.7%, ‘부모님/선생님에게 알려지는 것’ 31.1%, ‘금전적 피해’ 25.3%,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 24.3%, ‘온라인 활동/SNS 사용의 제한’ 15.0%, ‘기타’ 4.1% 순으로 답하였음(교육부, 2024. 12. 11.).

**[그림 2-6] 딥페이크 성적 불법영상물 피해 관련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 (교육부)**



자료: 교육부(2024. 12. 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 필요한 지원으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85.0%)을 가장 많이 택했으며,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4.2%), ‘개인신상 정보 삭제 및 보호’(71.9%)를 요청함.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발생 확인’ (22.2%), ‘부모님/양육자의 지속적 관심’ (17.8%) 순으로 나타남(교육부, 2024. 12. 11.).

#### 4)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적용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유포협박 등의 경기도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이 발생함.

**[표 2-15]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현황(2020~2024): 허위영상을 편집·반포등 관련**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1	259	170	168	550
경기도	7	66	50	46	180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서 지원한 피해사례 중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는 2021년 21건, 2022년 25건, 2023년 36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95건으로 나타남(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b).

**[표 2-16] 경기도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현황(2021~2024)**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성·편집 (딥페이크 등)	21 (2.7%)	25 (3.3%)	36 (5.1%)	95 (6.5%)
전체 디지털성범죄	777	764	709	1,451

주: 괄호의 내용은 각년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비 합성·편집 피해의 비율임.

자료: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p. 20.

- 또한 경기도에서 불법합성·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5%를 차지했고, 20대가 24명(25.3%), 30대 11명(11.6%) 등 순이었음(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b).

**[표 2-17] 경기도 불법합성·도용(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연령미상
계	95	49	24	11	6	1	4

자료: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p. 23.

## 2.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가. 중앙정부 및 타 광역지자체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1) 범부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정

- 2024년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허청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대응 범부처 TF’(2024. 8. 30.)를 구성하여, 8회의 TF회의를 진행하고, 6회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시급한 주요 법안 마련(2024. 9. 26.)과 행정조치(경찰청 집중단속)를 실시하였음(국무조정실, 2024. 11. 6.).
  -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에 착수하였고, 성평등가족부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삭제 지원, 상담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함. 교육부는 학교 피해자 현황조사를 매주 실시하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실시하며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 국방부는 군 내부망의 사진을 비활성화 조치하고 전 군에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함. 방통위와 방심위는 해외 SNS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에 노력함(국무조정실, 2024. 11. 6.).
-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조치를 처리하였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은 우선 조치를 통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추진함.
  - 입법조치 사항으로, 성폭력처벌특례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처벌 조항을 상향하였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였으며,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근거도 신설함.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고,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을 허용하였고,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삭제지원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였고,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함.
-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24.8.28.~’25.3.31.)을 운영하였으며,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을 입건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추적과 검거 활동을 추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

핫라인을 구축하였고, 해외 SNS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함. 교육부는 사안이 발생한 후 긴급대응TF를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피해자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특별예방교육주간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함. 국방부 역시 대응TF를 운영하며, 군 내부망에서 사진이미지를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교육을 진행함. 과기부는 딥페이크 탐지R&D 설명회 개최, 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를 운영하였음(국무조정실, 2024. 11. 6.).

-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검찰, 경찰,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동시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365일 피해접수와 상담, 삭제지원을 제공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하여, 피해자 1,807명에게 상담·연계·삭제 등 지원 서비스를 1만 8,523건을 제공하였음. 또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집중적인 삭제지원 및 수사 의뢰 등을 실시함(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 정부는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4대 추진분야, 10대 주요과제, 2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범부처 협업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플랫폼 규제, 피해자 지원, 처벌 등 단계별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구축을 제시함.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수사대응력 강화, 국제 사법 공조 강화를 주요과제로, (2) 플랫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과제로 정함. (3)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 지원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위한 R&D 및 AI 위협관리 강화를 주요과제로, (4)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의 주요과제를 제시함(국무조정실, 2024. 11. 6.).
- 새정부는 국정과제 98번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을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포함함(국정기획위원회, 2025: 146).
-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AI 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 추진 내용이 포함됨(국정기획위원회, 2025: 146).

## 2) 타 광역지자체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서울시는 2024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대응하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24시간 신고 및 삭제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하여 신고 방법 및 범죄 채증 방법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2024년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여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을 발표함(서울시, 2024. 8. 28.).
-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4. 9. 10.), 4자 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통합지원을 발표함. 통합지원의 내용은, (1) '스쿨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인될 경우, 서울시로 연계하고,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이 신속 대응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 실시, (2)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검찰-경찰 간의 피해 정보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삭제지원 제공, (3)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계획을 제시함(서울시, 2024. 9. 10.).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2025. 5. 15.),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제22조의제2호)하고,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지원 요청을 추가함(제6조제3항).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 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함.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640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계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 및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부산시, 2024. 9. 9.).

## 나. 경기도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 경기도는 2024년 8월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바로 8월 27일

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대응 지침을 31개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함.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신고 창구를 대응단으로 일원화함.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진행함. 대응단은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133건의 피해를 접수했고 모니터링, 신고 및 수사외뢰, 심리상담, 기관연계 등 144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했고, 교육부와 연계하여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교육을 3회(9.2/9.3/9.9)에 걸쳐 진행함. 또한 12월부터 EBS 마스크트 펑수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함(경기도, 2024. 8. 27;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 경기도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제조 및 반포) 관련 통합지원추진체계를 마련하여, 1개월 동안 긴급지원체계(2024. 8. 26. ~ 9. 27.)를 운영함(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74).

[그림 2-7]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통합지원추진체계



자료: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 [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Sword=](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Sword=)(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024년 8월 26일에 답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자 상담시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경기도는 답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31개 시군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함. 또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긴급 모니터링을 확대하였음(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73).

[그림 2-8] 경기도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 조치(2024)

경기도 신고 창구 일원화	초기 대응 지침	주요 피해사례 안내	홍보 캠페인

자료: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 [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word=\(최종검색일: 2025. 9. 10.\)](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word=(최종검색일: 2025. 9. 10.))

- 특히 초기 대응 카드뉴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총 7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 또한 경기도 추석 연휴에도 불법합성물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함(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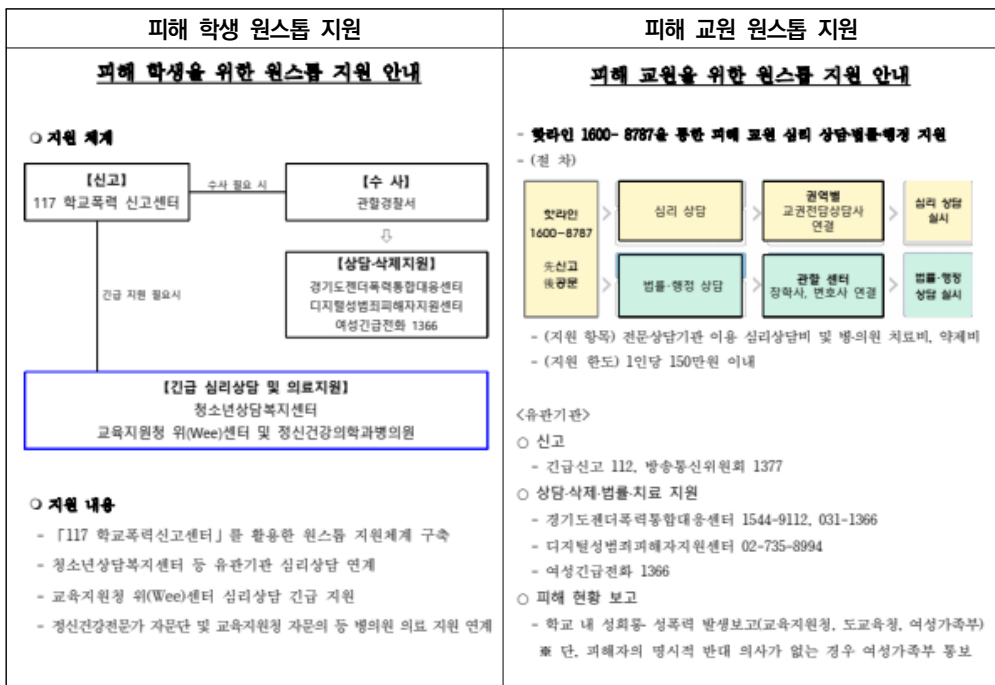
[그림 2-9] 답페이크 성범죄 초기대응지침 다국어 카드뉴스(7개 국어)

중국어버전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자료: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 [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word=\(최종검색일: 2025. 9. 10.\)](http://www.majubom.kr/web/board/cardnews_list.php?page=5&word=(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심리상담,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을 발표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117로 신고, 수사, 상담, 삭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자문단과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함. 교원 지원은 핫라인(1600-8787)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 행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117상담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함(경기도교육청, 2024. 9. 2.).

[그림 2-10] 경기도교육청 불법 합성물 피해 학생 및 교원 원스톱 지원체계 및 내용



자료: 경기도교육청, (2024. 9. 2.). 경기도교육청,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응 총력.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 (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남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자료 어플리케이션인 ‘경찰조아용 범죄예방교실’을 용인서부경찰서가

용인시와 협업하여 개발했음(경기도, 2024. 11. 5.).

- 용인서부경찰서는 2024년 9월 27일 도내 중학교 학생 639명과 교원 48명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마약범죄 예방 등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함(매일신문, 2024. 9. 24.).
-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과 이를 유료로 구매 및 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함.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였고, 24명은 이를 구입 및 시청하였는데, 구매자들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남(경기남부경찰청, 2024. 9. 19.).
- 경기북부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십여개의 텔레그램 지인능력방 등에 참가하며 고교 동창 및 대학교 동창생 등의 주변 지인과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 유포,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하였다고 발표함(경기북부경찰청, 2024. 10. 21.).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장수사, 텔레그램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연예인 딥페이크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합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2명, 20대 1명의 피의자를 검거함.
-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사이버범죄수사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공조를 진행했으며, 한국어 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국선번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함. 또한 연예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범행에 있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예기획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경기북부경찰청, 2025. 4. 11.),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HYB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수사협력과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활동 협력체계를 마련함(경기북부경찰청, 2025. 2. 25.). 경기북부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범죄 확산에 대응하고자 경기북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SNS 채널 ‘폴리슈(Pol-Issue)’<sup>8)</sup>를 활용한 퀴즈이벤트(2024. 9. 23~ 10. 6.)를 실시함(경기북부경찰청, 2024. 10. 17.).

---

8)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Pol)이 중요사안(Issue)을 알려준다'는 의미의 카카오톡 채널 '폴리슈'(Pol-Issue)를 개설하여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포스터 및 카드 뉴스를 24건을 게시하는 등 꾸준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음(경기북부경찰청, 2024. 10. 17.).



# III

## 딤편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

1. 딤편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정책의 방항
2.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항



## 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

### 가.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약: 부다페스트협약」

- 부다페스트협약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주도하여 2001년 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임.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가입이 허용되어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등 2025년 11월 현재 총 81개국(이 중 22개국이 서명까지 한 상태임). 부다페스트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착취물<sup>10)</sup>을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 컴퓨터 관련 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를 실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 원활한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음.
- 협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정의 조항이고, 제2장 제1절은 컴퓨터시스템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 행위와 그 책임에 관한 것으로 실제 규정, 제2절은 증거수집 등 절차 규정, 제3장은 국제공조와 범죄인인도 등에 관한 것임(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협약은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불법접속(제2조), 불법감청(제3조), 데이터 침해(제4조), 시스템 방해(제5조), 범죄를 행할 의도로 장치 사용(제6조), 컴퓨터 관련 위조 및 사기(제7~8조),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제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제10조) 등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약 당사국이 각국의 입법으로 형사 범죄화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이러한 범죄의 미수, 방조 및 교사(敎)와 법인의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까지도 상세히 규정함(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제2절은 위에서 명시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당사국들

9) 당사국 및 비준 현황은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signatures> 참조.

10) 부다페스트 협약을 포함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아동 음란물(child pornography)”이라는 용어 사용이 관례적이었으나, 아동 성폭력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개념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른 국제규범의 용어 정비 경향과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한 취지를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원문에서 “child pornography”라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 성착취물”로 지칭하기로 함.

이 자국 내 법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은 다음의 각 권한을 가짐(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① 컴퓨터데이터 보존 (제16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가 손괴·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존하도록 강제할 권한
- ② 통신데이터 보존 및 제출 (제17조)  
사이버범죄의 통신경로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인터넷 접속기록 등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보존명령을 내리고 충분한 통신데이터를 제출받을 권한
- ③ 컴퓨터데이터 제출명령 (제18조)  
자국 내 사람에게 컴퓨터시스템·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ISP에게 가입자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제18조)
- ④ 컴퓨터데이터 수색·압수 (제19조)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데이터에 대한 수색·압수 권한
- ⑤ 통신데이터 실시간 수집(제20조·제21조)  
신속한 수사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ISP에게 수집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및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통신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통신내용 데이터(콘텐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ISP에게 수집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 제21조에 따르면, 통신내용 데이터(content data)의 실시간 수집과 기록에 대한 수집 권한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로 철저히 제한됨. 이러한 권한 제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당사국의 주권 내에서 결정되는 중대범죄 카테고리에만 해당 수집권이 적용됨을 의미함. 협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권한 행사의 사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음(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협약은 사이버범죄의 초국적 특성을 인식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자 당사국 간 원활한 법집행 협력과 국제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제3장을 마련하였음(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제24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1년 이상의 구금형이나 그 이상의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경우에만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최소 형벌 기준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국제적 인도 요청을 방지하고, 진정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협약은 각 당사국이 상호 간에 체결한 기존의 인도 조약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협약 자체가 인도의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제25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사이버범죄 및 전자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조사 및 소송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 협력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되,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된 거절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 동조는 긴급 상황에서 팩스나 전자메일 등 신속한 통신 수단을 통해 상호 협력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민감한 사이버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임. 제26조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사전 요청 없이도 자신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상호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제공국이 상대방의 수사나 소송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제27조는 당사국 간에 별도의 국제협약이나 상호 입법에 기반한 특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이 상호협력 요청의 송수신과 집행을 담당할 중앙기관을 지정해야 함을 명시함. 긴급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직접 다른 당사국의 사법당국과 통신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통해 요청을 전달할 수 있음. 또한 피요청국은 정치범죄 관련성이나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컴퓨터데이터 보존 및 실시간 수집 협력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였음.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요청할 수 있음(제29조). 이 요청에는 보존을 요청하는 기관, 대상 범죄와 관련 사실의 요약, 보존할 컴퓨터데이터와 범죄의 연관성, 데이터 보관자나 위치 정보,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추후 사법공조 요청 의사 등이 명시되어야 함. 피요청국은 쌍방범죄 조건(dual criminality) 없이도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최소 60일 이상 보존되어 요청국이 후속 사법공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됨. 다만 피요청국은 정치범죄 관련성이나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제35조는 협약 당사국이 사이버범죄 조사 및 수사 협력에 필요한 실시간 통신데이터 및 통신내용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연락 창구(point of contact)'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

다고 규정하였음. 이러한 24시간 상시 접근 창구는 기술적 조언 제공, 데이터 보존, 증거 수집, 법적 정보 제공, 용의자 위치 파악 등 다양한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나. 「유엔사이버범죄협약(안)의 전자증거 수집 규범

- 2024년 12월 24일 유엔총회 결의안 79/243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사이버범죄협약(안)<sup>11)</sup>(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bating Certain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ystems and for the Sharing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of Serious Crimes)은 사이버범죄의 예방부터 처벌, 국제협력까지 전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법 틀임. 협약은 전문(Preamble)과 함께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총칙(제1장), 범죄화(제2장), 관할권(제3장), 절차적 조치(제4장), 국제협력(제5장), 예방조치(제6장), 기술적 지원 및 정보 교환(제7장), 이행 메커니즘(제8장), 부칙(제9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구조는 사이버범죄 대응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부다페스트협약의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음.
- 특히 협약 제4장은 절차적인 수단과 법집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사이버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함. 제4장의 핵심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된 트래픽데이터(traffic data), 콘텐츠데이터(content data) 및 가입자 정보(subscriber information)를 포함한 특정 전자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협약은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당사국이 필요한 입법조치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함(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구체적으로,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는 절차적 조치들은 전자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제25조),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및 부분 공개(제26조), 저장된 전자데이터

---

11) <https://www.unodc.org/unodc/en/cybercrime/convention/text/convention-full-text.html>  
(최종검색일: 2025. 11. 24.)

에 대한 제출명령(제27조), 저장된 전자데이터에 대한 수색 및 압수(제28조), 트래픽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제29조), 그리고 콘텐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도청(제30조)을 포함함.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적 권한들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법절차 상 정당성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협약은 ‘전자증거(electronic evidence)’를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메일 통신, 소셜 미디어 게시물, 휴대폰 위치 정보 또는 카메라 영상 등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를 법적으로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협약 제23조(일반 조건 및 보장)와 관련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해야 하는 입법조치는 매우 구체적임. 첫째,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지정된 저장 전자데이터(특히 트래픽데이터, 콘텐츠데이터, 가입자 정보)의 신속한 보존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특히 해당 전자데이터가 손실이나 변조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보존명령의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둘째, 보존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있는 지정된 저장 전자데이터를 보존하고 그 무결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협약은 보존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규정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셋째, 당사국은 저장된 전자데이터의 수색, 접근, 그리고 압수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입법화해야 함(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협약 제28조에 따르면,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영토 내의 정보통신기술시스템 또는 그 일부,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전자데이터에 대해 수색하거나 이에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자데이터 저장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더 나아가,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통신기술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압수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전자데이터의 전자적 사본을 만들고 보관하며, 관련 저장 전자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접근된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서 전자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넷째,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강제 협력 의무를 입법화해야 함. 협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권한 있는 당국의 요

청에 의하여 그 존재 기술능력 범위 내에서 실시간 트래픽데이터 또는 콘텐츠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당사국이 마련하도록 요구함. 동시에,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절차의 집행 사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해야 함.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용의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 다. 유럽연합의 「아동 성폭력,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방지 지침」 등

### 1) 아동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규범

- 2011년 제정된 「아동 성폭력,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방지 지침(Directive 2011/93/EU, 이하 2011/93/EU 지침)」은 일찍이 EU 전역 차원에서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범죄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이었음. 코로나 이후 AI, 딥페이크, 실시간 스트리밍 등 신기술 악용 사례가 급증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부터 새로운 지침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202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2011/93/EU 지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하여 범죄에 대한 정의와 처벌을 포괄적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 보다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지침 개정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AI·딥페이크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제시되었으며, 「2011/93/EU 지침」은 아동 성착취물을 실제 이미지 중심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AI 생성 콘텐츠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기 때문임.
- 유럽의회는 2025. 6. 17. 위 개정안(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7 June 2025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을 찬성 599표, 반대 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AI·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이며 성인지적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음.<sup>12)</sup> (1) 아동 성착취물의 정의에서 “생성

방법 무관”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현재와 미래 기술을 모두 포괄하고, (2) 위장수사, 허니팟, 통신 감청, 전자 감시 등 수사 기법을 조직범죄 수준으로 허용하며, (3) 민·형사 시효를 완전 폐지하고 (4) 바르나후스 아동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신고 메커니즘의 구축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성착취 대응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먼저 정의에서 아동 성착취물은 “생성 방법(인공지능 사용을 포함)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 성착취물에 있어서 AI 딥페이크물을 포괄하였음.<sup>12)</sup> 전문에서 기술 매개 범죄는 다른 범죄와 그 심각성과 트라우마가 동등하므로, 다른 범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됨. 딥페이크물도 실제 아동 성폭력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임.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이 실제 또는 가상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개입된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모든 자료(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또는 증강·확장현실·현실 환경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 포함)(2(1)(3)(a))” 또는 “아동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개입되거나 아동의 내밀한 부위를 주로 성적 목적으로 묘사하는 모든 사실적 이미지, 의사 사진, 재현물 또는 표현물(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또는 증강·확장·가상현실 환경의 이용을 포함하여 생성 또는 조작 방법에 관계없음)(2(1)(3)(d))”이라고 정의됨(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해야 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최소 형량의 기준을 정하였음. AI 등으로 생성한 것을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물의 소지 및 취득,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 접근 행위는 최소 2년 이하, 유포는 4년 이하, 제작은 8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각 2배 이상 상향된 기준을 정하였음. 더 나아가 AI 시스템 자체의 범죄화를 규정하여 아동 성착취물의 생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취득 또는 소유는 최소 1년 이하의 구금형, 그 시스템의 유통, 유포나 전송은 최소 2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개정안 전문 31은 아동성착취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사회적 낙인, 발달상 한계로 인해 수십 년 후에야 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존 지침이 일반 범죄에 비해 공소시효를 연장

12) 유럽의회의 최종 채택안은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116\\_EN.html](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116_EN.html) 참조. 이후 입법은 유럽의회 채택안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공식 입장 제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합의,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됨.

1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0613IPR28905/fight-against-child-sexual-abuse-updated-rules-to-address-new-technologies> (최종검색일: 2025. 11. 24.)

한 제도를 채택한 것과 달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였음(16a)(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개정안은 아동성착취 범죄의 수사에 있어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취할 것, 구체적으로는 조직범죄 등과 동등한 수준의 위장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 허니팟 등 신분비 공개수사(Identity Disclosure Investigation) 확대, 전자감시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러한 수사기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는 온라인 아동성착취와 그 네트워크 추적을 위한 수사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특히 전자 감시 기법을 명시한 것은 범죄에 대한 기술 기반 수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임(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개정안은 신고 메커니즘 등 다각적 피해자 보호 체계 역시 구축하였음. 신고 메커니즘은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동 친화적이고, 비밀을 보장하며, 무상이어야 하며 성인 지적이어야 함. 그 신고 메커니즘은 보복이 두렵거나 관할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제3자 신고를 보장함. 회원국이 해당 신고 체계가 재정 및 인력 측면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할 것 역시 명시하였음(18). 법률상담 및 관련 사법제도에서 법률대리 역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형사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되었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미성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피해 회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 대응에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되, 그 방식을 공익 조직의 권한 강화와 호스팅 제공자의 협력 의무로 구성했음. 구체적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직접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익 조직(INHOPE 핫라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구)”에게 탐지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조직은 이에 따라 성착취물을 탐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삭제나 접근 차단에 대해 직접 협력할 권한을 가짐. 호스팅 제공자는 이러한 신고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한편, 국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하거나 배포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음. ① 공익 조직(탐지·신고) → 호스팅 제공자(삭제·접근 차단), ② 회원국(접근 차단)의 다층 체계로 구성됨(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개정안은 법집행 차원을 넘어 국내 및 국제 차원의 아동성착취 대응 구조를 (1) 국내 조정: 회원국 내 모든 관련 주체 간 협력, (2) 국가 간 조정: 회원국 간 협력, (3) EU 차원 조정: EU 센터 및 유럽위원회와의 협력, (4) 국제협력: 국내 기관, 유로폴(Europol,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저스트(Euro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 EU Centre를 통한 제3국 협력이라는 4단계 구조의 포괄적 거버넌스로 구체화하였음. 회원국은 온·오프라인 아동성착취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개발·이행하는 데 있어 모든 관련 공공·민간 주체 간 효과적 협력과 조정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성착취 현황 평가, 통계 수집, 예방 조치 결과 평가, 정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국제적으로는 EU 내부의 협력(유로저스트·유로폴 중심의 정보 교환·합동수사), EU-제3국의 협력이 모두 이루어짐. 범죄가 여러 회원국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협력하여 어느 회원국이 형사절차를 수행할지 결정해야 하고, 필요시 유로저스트에 회부하고 모든 관할 국가 기관에 통보하여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회원국 기관, 유로폴, 유로저스트, EU 센터가 제3국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에 대응할 것도 명시하였음(Amendments proposal for a directive 2011/93/EU).

## 2) 성인 포함 딥페이크 성표현물의 포괄적 규제

- 유럽의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규범은 아동 보호에 한하지 않고 성인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구축되고 있음.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유럽연합의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의미함. EU는 2017년 「2011년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으나 EU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준이 지연되면서 EU 회원국별로 여성폭력 대응 법제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편차가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성폭력에 대한 통일된 대응체계가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3월, 이스탄불 협약의 기본 원칙을 EU 법제에 통합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지침(안)」(Directive (EU)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을 공식 제안하였음. 원안도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제한적이어서, 공동 입법기관들(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간 입법 협상 과정에서 대폭 강화되었음. 2024. 2. 6., 위 기관이 지침안에 합의하고, 같은 해 5. 14. 지침이 채택되면서 온라인을 포괄하여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EU 전역에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기준이 되었음.<sup>14)</sup>

- 지침은 여성폭력에 딥페이크를 포함한 생산·조작·변경을 명시하면서 AI 등 기술의 발전 양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회원국의 온라인 콘텐츠 제거·차단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수준을 향상하였음. 제5(1)조(내밀 자료 및 조작 자료의 비동의 유포)에서 딥페이크물을 포함하여 성표현물을 생산·조작·변경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그 위협 행위를 범죄화하였음.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포된 자료에 대한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이 해당 자료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력 있는 삭제·접근차단 명령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음(제23조). 회원국은 당해 행위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자국의 관할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국 관할에서 접근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행해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제12(3)조). 관련 중개 서비스 제공자 간 행동강령 등 자율규제 협력에 관하여도 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채택한 삭제·차단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42)(Directive (EU)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 EU 27개 회원국은 지침 채택일로부터 3년 내인 2027년 6월 14일까지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여, 충분한 이행 기간을 제공하였음. 회원국들은 이행 기한 내에 비동의 성표현물(원본 및 딥페이크) 배포 범죄화, 딥페이크 성표현물 생산·조작·변경 행위 범죄화, 신속 삭제 및 차단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지침 제45조는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유럽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 및 판례 발전을 모니터링하며,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평가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음.

### 3) 관련 규범체계-GDPR, DSA, AI법 등

-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데이터 주체(data subject) 중심의 데이

---

14) Directive (EU)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지침(Directive)은 유럽연합 당사국을 구속력 있는 규범이나, 규정(Regulation)과 달리 당사국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법정책 체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터 보호 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16년 제정된 규범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음.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제65조, 제66조 및 제17조(잊혀질 권리)는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가 삭제될 권리를 보유하며, 처리자는 부당한 지연 없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함. 처리자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 받은 모든 수령인(제3자)에게 그 데이터의 정정, 삭제 또는 처리 제한을 통지하고, 데이터 주체의 요청 시, 주체에게 해당 수령인에 대해 통지할 의무도 있음(제19조). 통지를 받은 제3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삭제 여부를 결정함(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은 행위를 범죄화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제가 아니며, 피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sup>15)</sup> 유해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전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GDPR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GDPR에 기반한 메커니즘은 온라인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었음(Zamfir & Murphy, 2024: 6).
- GDPR이 선택적 협력 규범이라면, 2022년 11월 1일 채택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Regulation (EU) 2022/2065, 이하 ‘DSA’)」은 강제규범임. DSA는 EU가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플랫폼의 모범을 제시하려는 목표로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관리 활동을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함. 불법 콘텐츠 개념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게 정의되어야 하며, 아동성착취 이미지 공유, 비동의 유포, 온라인 스토킹 등을 그 예로 들(제12조)(Digital Service Act, Regulation (EU) 2022/2065).
- DSA에 따라 모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메커니즘 구축,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식별 및 제거 도구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s)’와의 협력체계를 포함하여 신고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EU 내 월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이하 VLOP)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이하 VLOSEs)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VLOP는 불법 콘텐츠 및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 평가 및 식별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 의무를 추가로 부담함(제34조

15) GDPR은 시간·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나, 실무상 부당한 지연이 없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봄.

(1))(Digital Service Act, Regulation (EU) 2022/2065). 위험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동의 없이 유포된 내밀·조작 자료를 신속하게 신고 처리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의무화함(제87조). 23년 4월 이래 20여 개 사가 VLOP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sup>16)</sup>

- DSA가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1:1 메시지와 프라이빗 채팅은 개인 통신으로 DSA의 규율범위에서 애초에 제외되며, 규율 범위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일부라는 한계가 있음. Facebook 비공개 그룹, Slack 채널 등은 호스팅서비스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며, 이메일, 1:1 메시징 서비스, WhatsApp, Telegram의 프라이빗 채팅은 개인 통신으로 명백히 호스팅 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와 함께, 「ePrivacy 지침(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이 보장한 사용자의 통신 기밀성과 암호화는 오히려 Telegram, WhatsApp 등 메시지 서비스가 규제를 회피하는 기반이 되었음. 이에 EU는 「Regulation 2021/1232 (임시 규정)」을 마련하여 ePrivacy 지침 중 제5(1) 통신의 기밀성, 제6(1) 트래픽 데이터 삭제 의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CSAM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이를 신고 및 삭제하도록 하였음. 임시 규정에 따라 CSAM (아동 성착취 자료) 탐지 목적으로 모든 개인 메시지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었음. 2021년 3년간의 한시법으로 도입된 임시 규정은 2024년에 다시 2026년 5월까지 연장되어 시행 중임.
- 한편,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6월 13일 최종 채택되고 2024년 8월 1일 발효된 EU AI법(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AI 시스템을 설계, 관련 위험 및 해당 책임 의무 등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음. 첫째, 허용 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 범주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AI 시스템이 분류되며, 이러한 시스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됨. 둘째, 고위험(High risk) 범주는 기술적·법적·윤리적 위험이 상당한 시스템으로,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됨. 셋째,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범주는 투명성 의무 등 경미한 의무가 적용되는 영역임. 넷째, 최소 또는 무위험(Minimal or no

---

16) 현재 지정 VLOP 목록은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list-designated-vlops-and-vloses> 참조.

risk) 범주는 자발적 행동 수칙 준수만을 권장함(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Article 3(60)은 딥페이크를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로서 기존의 인물, 물체, 장소, 실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여 거짓으로 진정성 있거나 진실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로 정의 하며,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시스템 자체는 제한적 위험으로 분류됨. 다만 Article 5(1)(a)는 “의식을 초월한 정신차단 기법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 기법을 배치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물질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켜 중대한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딥페이크는 허용 불가 위험으로 상향 분류될 수 있음. 2025년 발표된 공식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Article 5(1)(a)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의도(intention)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 효과만으로 충분함을 강조함.<sup>17)</sup> 즉, AI 시스템의 제공자/배포자가 해악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I 시스템이 조작적·기만적 기법을 배치하고 그것이 중대한 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됨(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DSA와 달리, AI법의 규제대상은 AI 시스템으로 직접 콘텐츠 삭제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조작적·기만적 딥페이크 생성 도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공급 단계”에서의 규제를 담당함. 따라서 이미 생성되어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된 딥페이크 성표현물을 제거하는 의무는 AI법의 범위 밖임. 국가 시장 감시 당국은 금지된 AI 시스템을 계속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 가용성 금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도구 자체의 배포 중단을 의미할 뿐 이미 생성된 콘텐츠 삭제와는 무관함.
- EU의 새로운 2024/1385 지침, DSA, AI법의 세 가지 규범은 딥페이크 성표현물의 생성, 유포, 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예방→투명성→형사처벌의 다층적 보호 체계를 구성하며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및 AI 개발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함. 관련 주체들은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반영하며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딥페이크 성표현물의 성적 대상화 및 젠더화된 피해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Rigotti, McGlynn, Benning, 2024).

17) Guidelines on the defini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established by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https://ec.europa.eu/newsroom/dae/redirection/document/118559>

**[표 3-1] 답페이크에 대한 유럽 규범의 다층적 규제 체계**

구분	2024/1385 지침	DSA	시법
대상	회원국	온라인 플랫폼	시시스템 개발자/배포자
규제 형태	형사범죄화	콘텐츠 삭제, 위험평가, 투명성 보고	- 금지 대상 - 투명성 의무
초점	행위의 형사범죄화	플랫폼의 신속 삭제	생성도구의 기만적 이용 방지

자료: 연구자 작성

## 라. 미국의 'TAKE IT DOWN Act' 등

### 1) 주정부<sup>18)</sup>

#### 가) 답페이크 성표현물 처벌

- 미국 각 주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는 비동의 유포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음. 초기 법률 형태에서 비동의 유포의 대상으로 규정한 이미지나 시각 자료라는 표현은 실제의(actual) 이미지를 전제하였으므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생성된 표현물인 답페이크 성표현물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이 개정되면서 법 문언은 '디지털 이미지', '전자 이미지', '사실적 표현' 등의 비교적 모호한 용어로 답페이크 표현물을 포괄하다가 최근에는 "컴퓨터 생성(computer-generated)", "디지털화를 통한 생성 및 변경(created or altered through digitization)"과 같이 수단, 과정과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법은 "사실적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전자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컴퓨터 생성 이미지"라고 최대한 예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2025년의 콜로라도 SB288은 "내밀한 디지털 묘사(intimate digital depiction)"라는 신조어를 도입하여 법 개념의 명확화를 시도하고 있음.
- 버지니아주는 2014년부터 비동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년 법을 개정하여 답페이크 성표현물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최초의 주 중 하나가 되었음. 강

18) 연방법 및 30여 개 주는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를 여전히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성폭력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이하 'CSAM') 등 대안적인 용어로 개정된 주가 다수 있으며, 미연방 법무부 역시 CSAM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통일적으로 아동성착취물로 지칭함.

요, 괴롭힘, 또는 협박할 의도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에 사용된 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처벌함. “다른 사람”의 정의에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 개작 또는 수정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묘사하려는 의도 아래 해당 인물의 얼굴, 초상, 그 밖의 식별 가능한 특징으로 인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음.<sup>19)</sup> 기본적으로 1급 경범죄로 정하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또는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는 6급 중죄로 상향됨(Code of Virginia § 18.2-386.2).

-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성표현물 규제 중 제작행위에 대한 텍사스주의 개정법에 주목할 만함. 텍사스주는 2023년 형법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 딥페이크물의 제작을 명시적으로 형사 범죄로 규정했으며, A급 경범죄, 즉 1년 이하의 구금과 \$4,0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Texas Statutes: Penal Code §21.165).
- 아동 대상 딥페이크물 처벌은 대부분 2024년 이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져 별도의 조항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함. 최근에는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생성된 이미지도 처벌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음. 다수의 주가 이제 더 이상 실제 피해 아동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고, i)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인의 신체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 ii) 성인의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의 모습으로 변환한 이미지, iii)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AI로 완전히 새롭게 생성한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모두 동일하게 아동 성착취물로 보아 범죄로 처벌함. 아동과 달리, 성인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순수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만을 범죄로 봄(Texas Statutes: Penal Code).
- 대표적인 입법 모델은 사우스다코타주로, 2024년 2월 아동 성착취물(child pornography) 규정을 개정하면서 딥페이크 콘텐츠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생성, 소지 및 유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였음. “컴퓨터 생성 아동 포르노그래피(Computer-generated child pornography)”는 “인공지능 그밖에 특정 데이터 입력을 처리 및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된, 실제 미성년자와 구별 불가능한 개인의 시각적 묘사”라고 정의됨. 일반적인 사람이 그 묘사를 보고 실제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묘사라고 볼 수 있다면 실제 아동의 이미지를 변형한 딥페이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컴퓨터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라도 모두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 이

19) Code of Virginia § 18.2-386.2 (Unlawful dissemination or sale of images of another: penalty)

는 실제 아동의 이미지 변형이나 실제 성인의 미성년 모습으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AI로 생성된 미성년자 이미지도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함. 사우스다코타주는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표현물도 “개인정보 침해” 표제 하에 처벌하나(South Dakota Codified Laws §22-21-4), 아동 성착취물(§22-24A)은 실제 인물이 없는 순수 AI 생성 이미지도 포함하고, 의도와 무관하게 생성 자체가 범죄인 데 반해, 성인 대상 딥페이크물은 처벌 범위가 훨씬 더 좁음. ①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현실적이지만 거짓된 이미지”로서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그 이미지가 진정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성을 갖추어야 함. 또한 ② 행위자의 의도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기 만족, 괴롭힘, 당혹·수치심 야기 중 하나 이상의 의도가 필요함. ③ 유포나 판매 행위만 처벌하고 생성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좁고 요건도 엄격함.

-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20개 주 이상에서 유포, 생성과 마찬가지로 중범죄로 규정하였음. 몇 개 주는 시정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함. 플로리다는 2025년 상·하원 만장일치로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HB 757, Fla. Stat. § 800.045), 아동 성착취물에서 “전자적, 기계적 그 밖의 수단으로 제작, 변경, 개작 또는 수정”된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아동 성착취물로 정의함. 유포의 의도가 있는 소지의 경우 2급 중범죄(최대 15년)로 처벌하며, 유포 의도 없는 단순 소지, 시정 행위도 제3급 중범죄(최대 5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됨. 3부 이상 소유한 경우도 유포 의도가 있는 소지로 추정됨.

## 나) 법정손해배상 모델

-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딥페이크 성표현물의 유포를 불법화하고, 이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모델을 확립한 최초의 주임. 기존 캘리포니아 형법은 개인의 “사진, 필름, 비디오 테이프 또는 녹음”의 비동의 유포를 금지했는데, AI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변조·생성된 자료는 법적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음(California Penal Code § 647(j)(4)). Marc Berman 의원은 2018- 19년 딥페이크 기술의 급격한 발전, 딥페이크 성표현물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형사처벌 외에 새로운 규제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Assembly Bill 602(“디지털·전자기술 이용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묘사: 청구원인”)을 발의하였음. 발의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니라 강화된 민사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임(California Civil Code § 1708.86). ① 대상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고 고의로 공개한 사람, ② 자신이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공개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단 전자는 동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후자는 동의 없음을 알았을 경우에만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 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특히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연방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구조의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악의적 위반의 경우 법정 손해배상금이 최대 25만 달러임. 종래 손해배상제도에 따르면, 유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평판의 손상 등 실손해를 입증해야 했는데, 이를 정량화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법정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이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임. 소 제기 기간 역시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되었음.

**[표 3-2] 캘리포니아의 손해배상 제도**

손해배상의 종류		내용	범위
① 이익의 회수		콘텐츠 생성·개발·공개로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	무제한
② 실제 손해		증명된 경제적·비경제적 손해, 위자료 등	무제한
법정손해 배상 <sup>20)</sup>	③ 악의적 의도가 없는 경우	최종 판결 선고 전 원고의 요청에 따라 ② 대신 청구	\$1,500~\$50,000 (1건당)
	④ 악의적 위반의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또는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때 증액	최대 \$250,000 (1건당)
⑤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압제, 사기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무제한
기타	수입료 등 소송비용	소송비용 회복	합리적인 범위
	가처분	콘텐츠 제거, 재배포 금지 등	법원의 재량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2025). Assembly Bill No. 621. [https://leginfo.ca.gov/faces/billVersionsCompareClient.xhtml?bill\\_id=20250260AB621](https://leginfo.ca.gov/faces/billVersionsCompareClient.xhtml?bill_id=20250260AB621).

주: 2025. 10. 13. 개정법률 반영

20) 손해배상 액수는 2025년 10월 개정시 증액됨.

- 캘리포니아가 선도적인 손해배상 모델을 도입한 이후, 뉴욕,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주 등에서 위 법제를 모델로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 유사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다른 주에서 손해배상제도가 아닌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데에도 그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제는 개별 생성자 및 유포자만 규제하고 딥페이크 생성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개자(facilitator)에 대한 책임 조항이 부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 2020년 이후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서비스 제공자들은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성인이며 동의 없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두어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법을 우회하였음. 이에 2024년 운영자와 중개자를 포함하여, 딥페이크 생태계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AB 621이 발의되어 2025년 10월 13일 제정,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개정법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딥페이크 포르노 서비스 운영자의 자동 책임조항임. (1) 딥페이크 성표현물 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하는 자는 디지털화된 성표현물의 제작 및 공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즉 그 자신이 생성자이자 배포자인 것으로 간주됨. 또한 운영자는 해당 자료에 묘사된 개인이 그 제작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은 해당하는 개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함(1708.86(c)(1)). 미성년자는 동의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됨(1708.86(b)(1)). 둘째, 개정법은 더 나아가 위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자(결제, 도메인, 호스팅, 광고 등을 모두 포함)를 규제하는 이른바 ‘30일 규칙’을 도입하였음(1708.86(c)(2)). 개인이나 검사가 해당 서비스가 딥페이크 웹사이트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에 그 서비스의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짐. 피해자 개인의 소송만이 아닌, 검사의 법정손해배상청구 제도, 즉 정부의 직접소송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규모 위반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케 되었음(1708.86(f)(2)).
- 캘리포니아법의 딥페이크 성표현물 손해배상제도는 2025년 미 연방 TAKE IT DOWN Act의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2) 연방제도

### 가) 배경

- 미국의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NCII) 규제는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TAKE IT DOWN Act」(Public Law. 119-12)가 발효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음. 2025년 5월 이전, 미국의 딥페이크 성표현물 규제는 주로 주법에 의존하여 심각한 법적 불일치와 집행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었음. 2020-2025년 사이에 딥페이크 성표현물 관련 주법이 빠르게 도입되었지만, 주마다 상이한 정의, 구성요건, 처벌 수준으로 인해 법적으로 불확실했고, 온라인 콘텐츠의 초국경적 특성상 주 차원 집행의 실효성 역시 제한적이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제수단의 편차였는데, 캘리포니아는 법정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통적 불법행위에 의존하여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했음.
- 2023. 10. 30.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4110)」은 AI 안전 기준 수립, 워터마킹 요구, 레드팀 테스트 의무화 등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의 본질상 형사처벌이나 제재 수단 같은 강제 메커니즘이 없어 그 한계가 명확했음.<sup>21)</sup> 행정명령의 규제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주로 연방정부 스스로 AI 사용과 연방 계약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규모 AI 모델 개발자(예: OpenAI, Google, Meta)의 보고 의무 정도에 그쳤음. 또한 개인 간 딥페이크 배포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은 없었음. 더욱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에 따라 즉시 폐지될 수 있는 근본적 취약성을 가졌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10을 폐지했으며, 이는 의회의 입법이 아닌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규제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 Elliston Berry 사건은 연방법 제정 이전 딥페이크 규제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극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음. 2023년 10월 텍사스 고등학교 학생 Elliston Berry(당시 14세)는 자신의 Instagram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로 생성된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음. 이 이미지는 Snapchat에 유포되었는데, Snapchat은 9개월간 삭제 요청을 거부했음.

21) 행정명령에 따른 규제 메커니즘은 연방기관의 표준 지침 개발 및 기업의 협력 권고, OSTP의 기업에 대한 이행 요청에 따른 기업의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주 법이나 행정명령은 무력했고 이 사건은 TAKE IT DOWN Act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

#### 나) TAKE IT DOWN Act의 제정

- 「TAKE IT DOWN Act」의 제정 과정은 미국 정치에서 드문 초당적 합의 과정을 보여 줌. 법안은 공화당의 Ted Cruz 상원의원(텍사스)과 민주당의 Amy Klobuchar 상원의원(미네소타)이 2024년 4월 처음 발의했으며, 2024년 12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재발의 후 2025년 2월에도 다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2025년 4월 28일, 하원에서도 409대 2로, 압도적으로 통과하여,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피해자 지원 단체, 스포츠 단체 등 여러 조직뿐만 아니라, Microsoft, Google, Meta, Snap, TikTok, NCAA, X, Amazon, IBM 등 기술 기업들도 이 법안을 광범위하게 지지했음.

#### 다) 법 내용의 구조

- 2025년 5월 연방법인 「TAKE IT DOWN Act」<sup>22)</sup>가 제정되면서 온라인 성폭력물에 관한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 법은 1) 범죄화 -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물 및 비동의 딥페이크물 유포 금지 및 2년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 2) 플랫폼의 의무 - 플랫폼의 신속 삭제(48시간 이내)·재게시 방지 의무화, 3) 집행 메커니즘 -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FTC 행정 처벌을 포함하여, 3가지 차원의 규제를 도입하여, 연방 차원으로는 최초로 강력한 규제를 정하였음.<sup>23)</sup>

##### (1) 처벌 조항

- 법은 47 U.S.C. § 223(h)를 신설하여 비동의 내밀 묘사의 “게시(publishing)”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진짜 이미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조’, 즉 딥페이크물도 명시적으로 포함됨. ‘디지털 위조’란 진정성 있는 시각적 묘사를 변형, 수정, 조작 또는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밖에 컴퓨터 생성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제작된, 합리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개인의 진정성 있

---

22)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에서 기술 딥페이크를 고정하여 알려진 악용을 해결하는 도구법)」

23) <https://www.compliancehub.wiki/complete-guide-to-u-s-deepfake-laws-2025-state-and-federal-compliance-landscape/> (최종검색일: 2025. 12. 24.)

는 시각적 묘사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됨. 성인에 대한 딥페이크물 유포 시 2년 이하 및 벌금,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물 유포 시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및 벌금에 처함. 또한 위협, 강요, 갈취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 유포를 협박하는 자는 각각 18개월 이하(성인 대상), 30개월 이하(미성년자 대상)의 자유형에 처함. 위반으로 배포된 자료, 위반으로 얻은 재산, 위반에 사용된 개인 재산은 모두 몰수되며, 배상명령(restitution)을 규정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처벌의 예외도 세심하게 설계되어, 위반행위의 신고, 법적 절차의 일부로서의 게시, 의료·과학·교육 목적, 피해자 지원 목적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 (2) 플랫폼의 의무

- 「TAKE IT DOWN Act」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47 U.S.C. § 223a에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임. “규제 대상 플랫폼(Covered Platform)”은 2026년 5월 19일 까지 신고-삭제(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지며, 유효한 신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제거해야 함(47 U.S.C. 223a note, SEC. 3(a)(3)).
- 규제 대상 플랫폼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② (a) 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게임, 오디오 파일)를 위한 포럼을 주로 제공하거나, (b) 서비스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비동의 내밀 콘텐츠를 게시, 큐레이팅, 호스팅, 제공하게 하는 경우임. 이는 Facebook, Instagram, TikTok, Snapchat, Reddit, Discord, Twitter/X 같은 주요 플랫폼을 포함함. 제외 대상도 명확히 정의되었음.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 전자우편 서비스, 주로 사용자 생성이 아닌 사전 선택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채팅이나 댓글 기능이 부수적인 웹사이트나 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ISP의 사용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과 이메일의 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된 것임.
- 규제 대상 플랫폼은 신고-삭제 절차에 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는 읽기 쉽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유효한 삭제 요청<sup>24)</sup>이 접수된 후 48

24)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에 의한 신고,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문제의 이미지 식별 및 위치 정보, 비동의의 이미지라는 선의의 진술, 연락 정보를 포함할 것이 요구됨.

시간 이내에 플랫폼은 (a)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b) 알려진 동일한 사본을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플랫폼에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그 게시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를 선의로 차단 또는 삭제한 경우, 그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었음.

### (3) 집행 메커니즘

- 「TAKE IT DOWN Act」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배타적 집행권을 부여하고, 캘리포니아 법과 같은 피해자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두지는 않아 신속한 행정조치와 연방 전역의 일관적인 법집행을 도모하였음.
- 플랫폼의 의무 위반은 연방법(15 U.S.C. § 57a(a)(1)(B))에서 정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은 2025년 현재 위반당(per violation) \$53,088이다.<sup>25)</sup> 벌금 외의 규제 조치도 있음. FTC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통해 플랫폼의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 배상(consumer redress)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FTC의 전통적 권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단순한 과징금이 아닌 피해회복을 목표로 함.
- 위 권한은 FTC가 종래에 가지는 권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되, 통상 FTC 관할에서 제외되는 비영리 조직도 TAKE IT DOWN Act에서는 포함하여 규제 대상 플랫폼의 정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집행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 마. 호주의 「2021년 온라인 안전법」 등

### 1) 다편이크 처벌

- 호주 연방은 다편이크 성표현물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1995년 형사법을 개정하여(성적 다편이크물법) ‘사적인 성적 자료(private sexual material)’를 폐지하고, 다편이크 성표

---

25) 「연방 민사제재금 인플레이션 조정법·개선법」 관할 당국은 매년 1월마다 관할권 내 민사제재금 최고 한도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함.

현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성적 자료’의 비동의 유포 범죄로 대체하였음(Criminal Code Amendment (Deepfake Sexual Material) Bill 2024, 제474.17A조). 종래 ‘사적 성적 자료(private sexual material)’란 피해자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 촬영된 자료를 의미하였는데(개정 전 형법 s 473.17A(2)), 딥페이크물은 피해자가 직접 상황에 관여하지 않아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법 개정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의 초점은 사생활 보호에서 “동의 없음”으로 이동하였으며, (a) 변경되지 않은 형태와 (b)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변경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6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게 되었음(s 474.17A(2)). 이때 자료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를 포함하며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변경된 성적 자료”는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포함)을 이용하여 편집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생성된 경우도 해당함(s 474.17A(2), Note.).

- 또한 i) 「2021년 온라인안전법」 75(1)조<sup>26)</sup> 또는 91조<sup>27)</sup> 위반과 관련하여 3회 이상의 민사벌명령(civil penalty order)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한 경우 및 ii) 비동의 유포(474.17A(1))의 기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자료의 생성·변경에 책임 있는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법정형을 7년 이하로 가중토록 하였음(474.17AA). 즉 딥페이크물 제작에 관여한 자가 유포까지 한 경우 형량은 가중됨.
- 위 개정 내용은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범죄인 경우이지만, 18세 미만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사법이 딥페이크를 명시하지 않아도 아동 성폭력물(child abuse material)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소지 및 제작을 포함하여 무겁게 처벌함(형법 D절).
-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2025년 9월 딥페이크 성표현물법안(「Crimes Amendment (Deepfake Sexual Material) Bill 2025」)이 양원 의회를 통과하여 1900년 범죄법을 개정하였음.<sup>28)</sup> 종래 범죄법은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행위 대상이 이미지에 한정되어, 촬영 및 유포만이 범죄행위였음. 제15C장 ‘친밀한 이미지의 녹화 및 유포’를 ‘친밀한 자료의 제작 및 유포’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하위 조항을 개정하

26)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유해 콘텐츠의 삭제 및 접근차단 조치의무

27) 89조에 따라 삭제 통지된 자료의 통지이행 의무

28) <https://dcj.nsw.gov.au/news-and-media/media-releases/2025/nsw-government-strengthens-protections-against-deepfakes-and-ima.html>: 법률안 내용은 <https://www.parliament.nsw.gov.au/bills/Pages/bill-details.aspx?pk=18782> 참조, 최종 개정법률 형태는 미공개

면서, NSW는 호주에서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도입하면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규정하는 주가 되었음. 구체적으로 첫째, 형법에 딥페이크 성표현물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sexually explicit deepfake)”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둘째, ‘내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는 ‘내밀한 자료(intimate material)’로 대체되어, 이미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음성, 딥페이크 텍스트까지 포함하게 되었음. 셋째, 딥페이크 성표현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범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범죄로 도입되어 행위 처벌 범위가 넓어졌음(범죄법 15C장 개정).<sup>29)</sup>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성표현물을 제작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처벌한다는 의미임.

## 2) 2021 온라인안전법과 eSafety Commissioner의 포괄적 딥페이크 대응

### 가) 개관

- 호주는 2015년 신설된 eSafety Commissioner(이하 ‘eSafety’)와 「2015년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전문 개정된 「2021년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이하 ‘OSA’)」을 중심으로 온라인 위험에 대응하고 있음. OSA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 체계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법제로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이 법률은 종래 규제 대상 서비스가 주로 소셜미디어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온라인 게임, 메신저, 콘텐츠 공유 서비스, 앱 배포 서비스,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최종사용자 직접 조치 확대 및 24시간 내 삭제<sup>30)</sup> 등 eSafety의 각종 집행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음. 법에서 eSafety의 권한은 ① 온라인 피해의 예방, ② 온라인 피해 발생시 보호, ③ 온라인 유해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선제적·체계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며, eSafety는 세 가지 핵심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OSA 준수를 장려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며 피해 발생에 대응함.
- 개정법은 ① 아동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② 이미지 기반 성폭력 ③ 성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④ 불법·제한 콘텐츠를 주요 규제 범주로 함. 비록 OSA가 딥페이크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eSafety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루기 위하여 포괄적 권한을 행

29) 25. 9. 뉴사우스웨일즈주 개정 과정은, <https://www.sydneycriminallawyers.com.au/blog/the-offence-of-producing-or-distributing-deepfake-porn-without-consent-in-nsw/> 참조.

30) 기존 48시간

사해 왔음. eSafety는 2020년 1월 최초로 발표하고 2022년 1월 개정한 ‘딥페이크 트렌드 및 도전 - 입장 성명(Deep fake Trends and Challenges - Position Statement)’에서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eSafety가 업계 및 사용자와 협력하여 이 접근을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음. 구체적으로 eSafety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이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및 삭제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온라인 세계를 더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안전 설계(Safety by Desig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이 제품·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안전성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① 딥페이크 관련 정책,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기준 수립 ② 불법 딥페이크 심사 및 삭제 정책 ③ 딥페이크 신고 방법 및 절차 개발 지원을 권장함(eSafety Commissioner, 2022<sup>31)</sup>). eSafety는 법 제6편 비동의의 이미지 유포에 대한 신고제도를 AI와 딥페이크 모두 포함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주로 제6편 이미지 기반 성폭력의 맥락에서 딥페이크 성표현물에 대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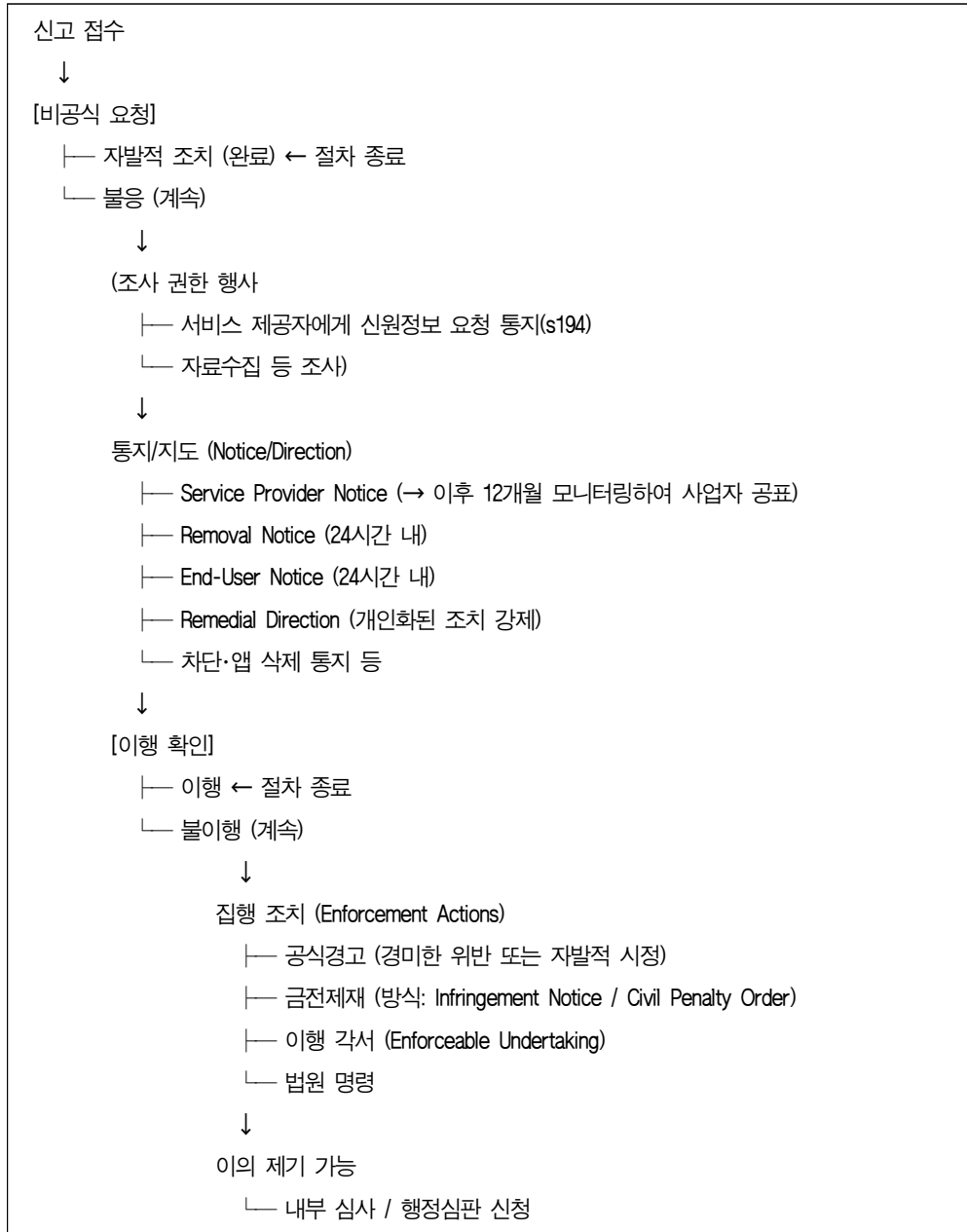
#### 나) eSafety의 신고-삭제 집행 메커니즘<sup>32)</sup>

- eSafety는 온라인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OSA는 이를 위하여 신고 접수, 조사 권한에서부터 삭제·차단 등 통지, 미이행 사업자 공표, 게시자 개선 지도, 벌금 및 통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다수의 금전제재(civil penalty) 조항, 법원 명령 신청권 등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eSafety는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을 취함.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eSafety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유해 콘텐츠 검토 및 제거를 요청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신고 내용만으로 불법이 명백하다면 사업자에 대해 24시간 내 콘텐츠 삭제·링크 삭제 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자(게시자)를 상대로도 삭제통지를 발부할 수 있음. 법령상 의무를 직접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시정통지, 삭제통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31) eSafety Commissioner(2022), Deepfake Position Statement.

32) eSafety Commissioner(2024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기반으로 정리

### [그림 3-1]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처리 흐름



자료: Online Safety Act 2021와 eSafety Commissioner(2024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를 참조하여 정리.

- OSA는 집행도구로 공식경고, 이행각서, 침해통지나 법원명령을 통한 금전제재금 부과, 법원의 행위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정하고 있는데 eSafety는 위반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행위자의 상황(미성년자 여부, 취약성, 반성의사, 조사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함. 공식 경고(Formal Warning)는 경미한 위반이나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 교화의 목적으로 활용됨. 공식 경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집행 조치를 판단할 때 경고 미이행 사실을 고려함. 이행각서(Enforceable Undertaking)는 위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시된 시정약속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준수명령, 손해배상, 부당이득상환 등을 명할 수 있음. 금전제재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통지(Infringement Notice)를 통해 금전제재를 부과하거나, 법원에 조치명령 또는 금전제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sup>33)</sup> 침해통지에 따른 제재금을 28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의 작위·부작위·금전제재등 명령을 구할 수 없음. 법원의 금전제재 명령은 중대한 위반, 다중 위반, 다른 집행 조치가 실패한 경우 적용되며 시효는 6년임.
-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경고나 삭제통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eSafety는 시정 지도(Remedial Direction)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자신의 기기에서 이미지를 삭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500 페널티 단위의 제재금이 부과됨(eSafety Commissioner, 2024).<sup>34)</sup> 시정 지도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에 맞추어 향후 해악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도구임. 개인행위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직원교육을 할 것 등의 시정지도가 가능함. 서비스 제공자 규칙은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BOSE), 산업코드 및 산업기준을 포함함.
- OSA에는 ISP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도구도 있음(Blocking request, s95).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eSafety는 강제력이 있는 차단 통지를 발부할 수 있음(s99).

33)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페널티 단위는 \$330으로, 일반적으로 침해통지를 통해서 위반 1건마다 개인 \$3,960(12 페널티 단위), 법인 \$19,800(60 페널티 단위) 금전제재가 부과됨. 법원의 제재금 명령(Civil Penalty Order)로는 개인에게 최대 \$165,000(500 페널티 단위), 법인에게 최대 \$825,000(2,500 페널티 단위)를 부과할 수 있음.

34) eSafety Commissioner(2024b), Image-Based Abuse Scheme Regulatory Guidance.

- 이처럼 OSA는 eSafety에 다양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 더욱이, eSafety는 1차적으로는 법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검토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비공식 요청이 더 빠른 삭제 조치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eSafety Commissioner, 2024b: 10). 비공식 요청이 대부분 성공적이어서(80% 이상) 삭제통지 발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eSafety가 OSA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발부한 삭제통지는 소수에 불과함. 또한 INHOPE(국제 아동착취 온라인 신고 센터)으로의 신고 및 호주 연방경찰(AFP)로의 회부는 국가별 기관 간 확립된 관계를 활용하여 신속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도 함. eSafety의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의 특징은 1) 신속한 삭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권한을 이용하기보다 주로 비공식 요청에 의한 삭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2) 링크 삭제 통지나 앱 삭제 통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댁페이지 유해 웹사이트 자체를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는 점 등임. 이러한 접근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에는 유용성이 있으나 가해자나 온라인 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삭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온라인 안전 규제에 있어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도 있음(Martin, N., 2025). 2024년 개정 연방 형사법상 댁페이지 성폭력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해자가 OSA 위반으로 eSafety가 청구한 금전제재(civil penalty)를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전제조건에 의하여 제한됨(Criminal Code Act 1995 (Cth) s 474.17AA). 이는 eSafety가 법정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3]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법정 이행 도구

권한	적용 법조	내용	
서비스제공자 통지·공표	73, 93, 113A, 118A, 123A	서비스제공자 통지 및 서비스약관 반복 위반시 그 내역 및 업체명 공표	
삭제	삭제통지	s 65-66, 77-79, 88-90, 109-110, 114-115	대상: 제공자 및 최종사용자(게시자) 불법·유해정보 삭제 서면 통지 (24시간)
	링크 삭제 통지	s124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통한 1급 자료 링크 제공을 중단토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 (24시간 내)
시정	시정지도	s 83	유포자 상대 삭제 및 향후 행위 방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상대 절차개선 등 포괄적인 시정조치 요구
	시정통지	s 119-120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포괄적인 시정조치 요구하는 서면 통지
차단	차단요청	s95	극단적 폭력물을 홍보·선동·지시·묘사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하도록 ISP에 서면 요청
	차단통지	s99	위 서면 통지
최종 사용자 통지	s 70	최종 사용자-게시자에게 삭제 또는 게시금지 요구하는 서면 통지	
앱 삭제 통지	s 128-129	앱 배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집행가능한 서면 통지	
집행 도구	공식경고	68, 76 92, 112, 117, 122, 126, 130	OSA 위반 및 각종 통지등 미준수와 관련된 서면 행정경고 미성년자, 경미한 위반·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통지	s163	OSA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 (시정요구 및 최초 경고 성격)
	이행각서	s164	특정인이 지정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향후 법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
	금지명령	s165	eSafety가 법원에 신청 : 법원의 작위·부작위 명령(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서비스 중단 명령	s 156-159	eSafety가 법원에 신청 :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서비스, 지정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12개월간 2회 이상 민사제재금을 받고 그 결과 공동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자료: Online Safety Act 2021와 eSafety Commissioner(2024),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를 참조하여 정리

주: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4-10/Compliance-and-Enforcement-Policy-Oct2024.pdf>

- OSA가 통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이용자(게시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s 194), 이에 따라 최종사용자인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재게시 금지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임. eSafety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담, 자

료제출 지시, 사본 취득 등 광범위한 조사 권한(s199-203)도 가지며, 정보요청 및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금전제재 책임을 짐. 온라인 콘텐츠의 휘발적 특성상 수시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는데도 불구하고, OSA에는 명확한 증거보전 규정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보존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법적 검토(2024)에서도 지적되고 있음(Ricard, 2024). 호주는 앞서 살펴본 부다페스트 협약 당사국으로 제16-17조에 따라 컴퓨터 데이터의 긴급보존 및 90일 보존 의무를 지니며, 이행입법도 완료하여 시행 중이나, eSafety의 조사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형사 수사 중심으로 설계된 호주의 증거보전 체계로 인하여 조사 과정 중 원본 콘텐츠 삭제·수정으로 인한 증거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다) 민간 공동·협력 규제제도

- OSA 제4편은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사항(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이하 'BOSE')」에 따른 규제 메커니즘을 새롭게 정했음. BOSE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대치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통신미디어부장관의 결정으로 정함. 2022. 1. 23. 최초의 형태에는 AI나 딥페이크 관련 내용이 없고 일반 유해 자료 범주로 규제되었으나, 2024년 개정하여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음. 서비스가 생성형 AI를 사용·사용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서비스의 생성형 AI의 설계·구현·유지 보수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포함시키고, 생성형 AI가 불법·유해 자료를 생성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최소화(proactively minimise)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s8A(1)(2)). 이는 발생 시 제거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함. 합리적 조치에는 i) 안전 위험 및 영향평가, 위험 완화조치, 생성형 AI의 설계→개발→배포→배포 후 단계 전반에 걸친 안전 검토 프로세스, ii) 최종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설명도구 제공, iii) AI 모델 훈련자료에 불법·유해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iv) AI가 불법·유해 자료 생성 명령(prompt)을 탐지하고 실행 방지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됨. BOSE는 강제력이 없으나, OSA에 따라 eSafety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준수 현황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보고 통지를 미준수하는 경우 공식경고 및 금전제재, 미준수사실 공표 등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이행력을 가짐.
- 역시 OSA 제9편 제7장에 새로 도입한 산업 코드(industry codes) 및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s) 규제 제도는 eSafety와 산업 간의 협력적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

했음. eSafety가 해당 업계의 대표 산업단체에 산업코드 개발을 위한 제출 통지(written notification)를 발부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코드(안)을 개발하여 eSafety에 제출하면, eSafety는 제출된 코드(안)이 적절한 커뮤니티 보호장치(appropriate community safeguards)를 제공하는지 심사함. 산업코드가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Safety는 직접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s)을 결정하여 등록함. 이러한 공동규제 방식은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eSafety의 최종 감독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임. eSafety는 산업협회가 제출한 1A종 자료 및 1B종 자료를 다루는 8개 산업코드 초안 중 6개를 등록하고, 나머지 두 부문은 거부하고 산업 표준을 등록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 22일부터 효력 발생하여 6개 부문의 등록 산업코드(Social Media Code, Hosting Code 등)와 2개 부문의 산업표준<sup>35)</sup>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산업코드·산업표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eSafety는 준수 강제 의무가 있는 서면통지를 발부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2024년 11월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페널티 단위가 기존 500(법인 2,500)에서 30,000(법인 150,000) 페널티 단위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개인 최대 \$9.9M, 법인 최대 \$49.5M에 달함.
- 2024년 6월 21일, 호주 eSafety는 OSA s145에 근거하여 「Online Safety (Designated Internet Services — Class 1A and Class 1B Material) Industry Standard 2024」(DIS 표준)를 결정·등록하였는데, 이는 'Nudify 앱'을 포함한 고위험 생성형 AI 서비스(High Impact Generative AI DIS)에 적용되는 의무 표준(Mandatory Standards)임.<sup>36)</sup> 이 표준은 아동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학대의 생성을 설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으로, 이전의 "Safety by Design"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을 의미함. 2024년 중반부터 eSafety는 Nudify 앱을 포함한 고위험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nudify 앱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18세 미만에 대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조작된 성표현물 관련 신고가 과거 7년간 접수된 총건수 대비 18개월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밝혔음.

35) RES(Relevant Electronic Services), DIS(Designated Internet Services)

36) eSafety Commissioner(2024d), Online Safety (Designated Internet Services Class 1A and Class 1B Material) Industry Standard 2024.

- 산업표준은 본래 적절한 커뮤니티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산업코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나, eSafety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위험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의무 표준을 결정하여 등록하였음. 의무표준 적용 대상은 nudify 앱을 포함한 고위험 AI 도구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Nudify 앱(AI 기반 성표현물 생성),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Declothing 앱), 아동 성착취물(CSAM) 생성 위험이 있는 고위험 AI 도구를 포함함. DIS 표준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을 생성하는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 특화된 의무를 규정함. 특히 “높은 영향도의 생성형 AI DIS(High Impact Generative AI DIS)”로 분류되는 서비스, 즉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되 X18+ 또는 RC(거부 등급) 자료 생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통제 기능을 갖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에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됨: (1) 아동 성착취물 또는 테러 선전물 관련 사용자 프롬프트 및 모델 출력에서 이러한 자료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기술 구현; (2) 생성형 AI 기능이 아동 성착취물 또는 테러 선전물 생성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기술 구현; (3) 모델의 정기적 검토 및 테스트, 즉시 조정 또는 완화조치 배포; (4) 오스트레일리아 내 아동 성착취물을 적극 추구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주요 경고 메시지 제시; (5) 생성형 AI 출력 식별, 훈련 데이터 내 아동 성착취물 자동 탐지 및 적절한 조치 실행. 모델 배포 플랫폼(생성형 AI 모델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이러한 모델이 아동 성착취물 또는 테러 선전물 생성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이용약관 강제 및 고위험 모델 관련 적절한 조치. eSafety에 따르면, 의무 산업코드 및 표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구현하도록 권고하던 이전의 Safety by Design(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 이니셔티브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진화한 것을 의미함.<sup>37)</sup> 이는 사전 예방적 규제로 작동함으로써, 2024년 법정 검토에서 지적한, 현행법상 Safety by Design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극복함. 2025년 9월 7일 eSafety는 nudify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반 기술 회사에 대해 공식경고를 발부함으로써 의무 표준에 따른 집행도구를 실제로 행사하였음.

---

37) <https://www.esafety.gov.au/newsroom/media-releases/esafety-urges-schools-to-report-deep-fakes-as-numbers-double> (최종검색일: 2025. 11. 24.)

## 바. 국내 관련법 및 대응체계

### 1)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반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위장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했고,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규정 마련 및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해,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개정함. 반포 목적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법정형도 상향(5년→7년)하였고(제14조의2),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14조의3, 제4항).
  -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특례의 절차, 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8 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9 준수사항, 제22조의10 면책이 신설됨. 2025년 6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었으며(제22조의2), 승인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됨(제22조의4, 제22조의5).
  - 2024년 12월 20일 개정을 통해,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신설함. 2025년 6월 21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15조의3),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제23조의2).

**[표 3-4] 답페이크 성범죄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2024. 10.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b>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b>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b>5년</b>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b>사람의 얼굴·신체</b>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b>7년</b>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b>5년</b>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b>7년</b>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b>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 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b>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
〈신 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b>편집물등 또는 복제물</b>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신규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최종검색일: 2025. 9. 5.)

-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제25조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제26조 경비의 보조,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0조 비밀 엄수의 임무, 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개정하였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의4)하였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삭제지원 대상에 신상정보를 포함함(제7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을 신설하고(제11조의2),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을 허용하며(제25조의4, 제25조의5),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의무(제38조의2)를 신설함.
- 2024년 10월 16일 개정에서, 제11조의2의 신설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제25조의4의 신설로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38조의2의 신설로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

**[표 3-5]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내용
<b>성폭력처벌법 (2024. 10. 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li> <li>-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li> </ul>
<b>성폭력처벌법 (2024. 12. 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li> <li>- 제22조의3 디지털 성범죄 수사특례의 절차</li> <li>- 제22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li> <li>- 제22조의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li> <li>- 제22조의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li> <li>- 제22조의7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li> <li>- 제22조의 8 비밀준수의 의무</li> <li>- 제22조의9 준수사항</li> <li>- 제22조의10 면책</li> </ul>

구분	개정 내용
<b>성폭력처벌법 (2024. 12. 2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li> <li>-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li> </ul>
<b>성폭력방지법 (2024. 10. 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 국가 등의 책무</li> <li>-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li> <li>-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li> <li>-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li> <li>-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li> <li>-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존중</li> <li>- 제25조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li> <li>- 제26조 경비의 보조,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li> <li>- 제30조 비밀 엄수의 임무</li> <li>- 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li> <li>-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li> <li>- 제3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li> </ul>
<b>청소년성보호법 (2024. 10. 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li> <li>- 제25조의4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li> <li>- 제25조의5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li> <li>- 제25조의10 수사지원 및 교육</li> <li>- 제38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최종검색일: 2025.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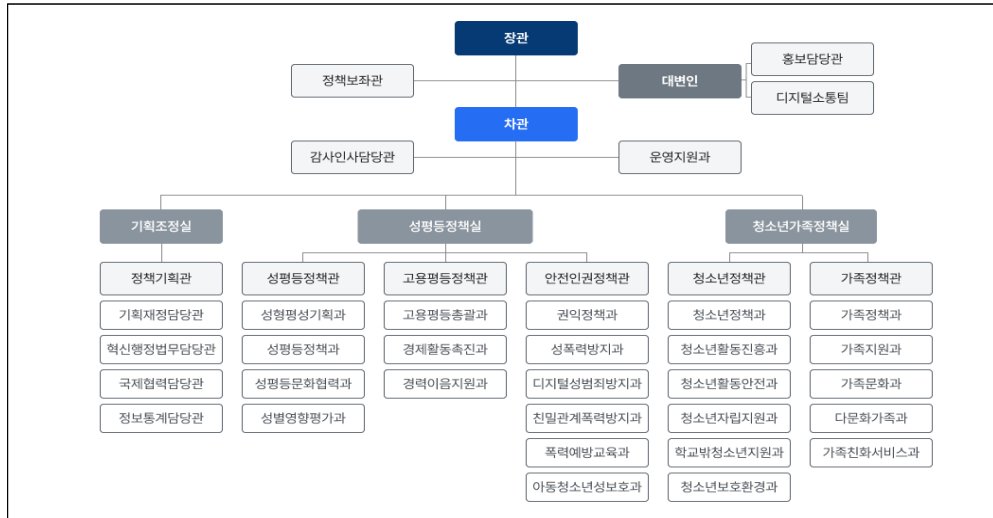
## 2) 다펀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 가) 중앙부처 및 기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조직

#### (1)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와

- 중앙부처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조직은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와임. 디지털성범죄방지와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산하 부서이며,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 및 관리하며 중사자 역량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분야 정책연구 및 법·제도를 개선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함(성평등가족부 자료).

[그림 3-2] 성평등가족부 조직도



자료: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검색일: 2025.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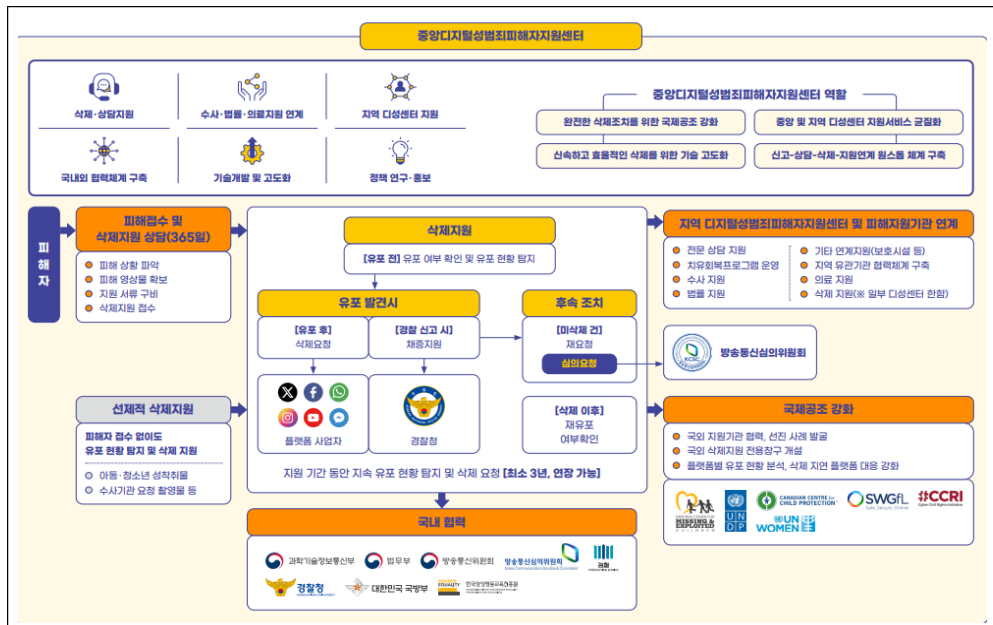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018년 4월 30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2025년 4월부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과 제7조의4에 근거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확대되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센터는 삭제지원팀, 역량강화팀, 상담연계팀, 삭제기술TF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건설링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별도의 홈페이지(<https://d4u.stop.or.kr/>)를 운영하고 있음. 센터는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 상담,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선제적 삭제지원, 국제협력 등을 하고 있음. 피해접수와 삭제지원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피해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여, 유포가 확인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플랫폼에 재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경찰 신고 시에는 피해영상물에 대한 채증을 지원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접수가 없어도 유포 현황을 탐지하여 선제적 삭제지원을 함.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수사지원, 법률 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그림 3-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자료: 한국어성인권진흥원,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리플릿(국문). file:///C:/Users/user/Downloads/2025년%20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리플릿(국문)%20(검색일: 2025. 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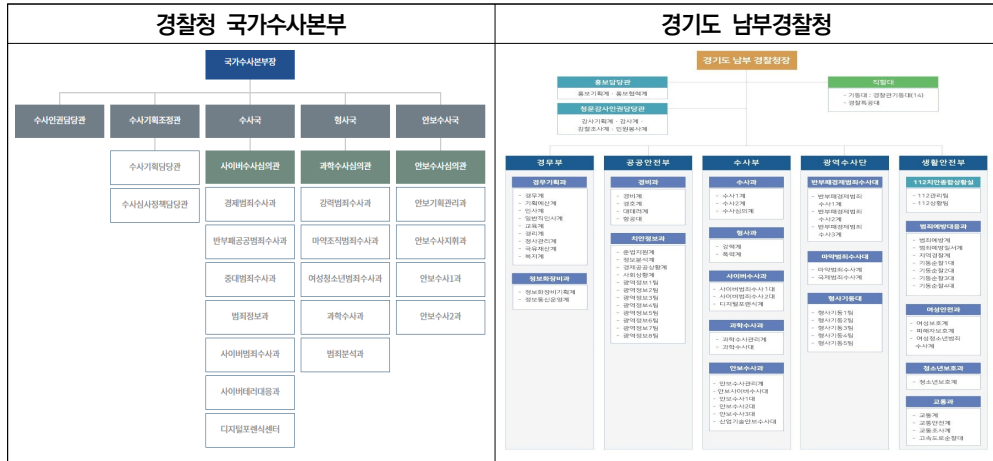
-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제7조의3),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제7조의4)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2018년부터 운영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출범하고,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고 밝힘. 또한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상징물(엠블럼)을 제작 및 배포함(성평등가족부, 2025. 4. 16.).

### (3) 경찰청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의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관할하고 있음.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수사계, 사이버성폭력수사계,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로 구성됨.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스미싱, 사이버도박 등에 대한 수사기획 및 지휘를 담당하고, 사이버성폭력계는 사이버성폭력 및 위장수사 등 관련 수사기획과 지휘를 담당하며,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는 해외 법집행기관 및 해외IT기업과 국제공조협력업무를 담당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스토킹수사계, 성폭력수사계, 가정폭력학대수사계로 구성됨. 스토킹수사계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지휘와 감독을 담당하며, 성폭력수사계는 성폭력 등 수사지휘 및 감독, 해바라기센터 관리를 담당하며, 가정폭력학대수사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사지휘와 감독을 담당함. 실제 수사업무는 각 시도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사이버범죄수사부서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는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관할함.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는 사이버범죄수사부서 관할이지만, 실제 수사업무에 있어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영상이 유포확인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수사부서가 담당하며, 유포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부서가 담당하게 됨.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업무는 경찰서 단위에서 진행하지만, 13세 이하 피해자의 경우는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경기도 남부경찰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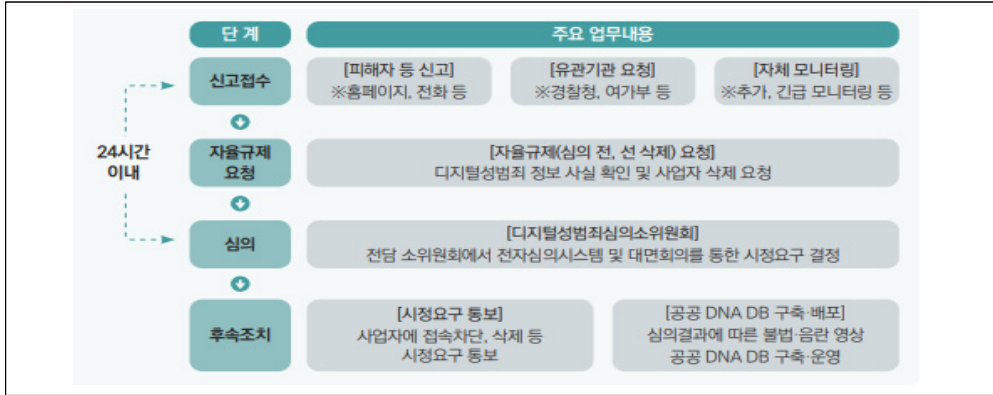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agency/orginfo/orginfo01.jsp>(검색일: 2025. 11. 27.); 경기도 남부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ggpolic.go.kr/main/html.do?menu=HC4>(검색일: 2025. 11. 27.)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25년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죄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정보통신 내용 중 「성폭력처벌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디지털성범죄정보(불법촬영·유포 정보, 성적 허위영상 정보), 이에 준하는 성관련 초상권 침해정보의 시정요구와 제2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의 시정요구 등을 담당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 디지털성범죄죄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일반인의 신고, 유관기관 및 단체 심의신청,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대상을 인지하며, 이후 사무처는 심의대상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사실관계 확인 등을 검토함.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확인된 심의대상에 대해, 사무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여 원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유도함. 또한 심의대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및 범죄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 전자심의 방식의 회의체 운영을 통해 긴급한 심의 및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 회의를 개최함. ‘시정요구’가 결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자에게 통보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심의 결과는 심의요청 기관 및 단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150-151).

[그림 3-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접수 및 처리절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4).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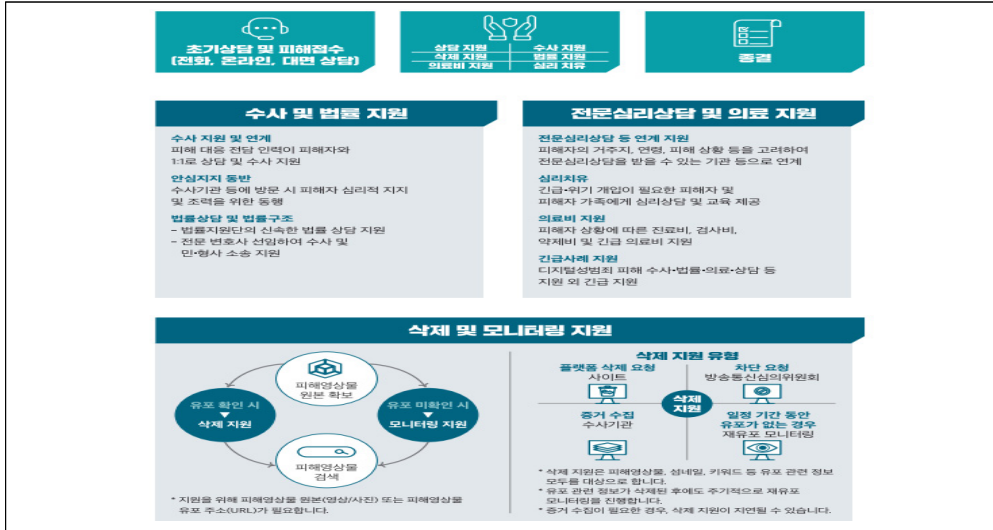
###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조직

-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이외에 경기도, 인천, 서울, 부산의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년 2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022년 9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이어서 개소함.

####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소되어 2023년까지 운영되었고, 2024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며 통합 운영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상담 및 피해접수, 수사지원 및 연계,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안심지지동반, 법률상담 및 법률 구소, 전문심리상담, 심리치유, 의료비 지원, 긴급사례관리 등의 피해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6]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내용



자료: 경기도센터폭력통합대응단(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p. 7.

(2)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2021년 6월 개소하였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팀장 등 직원 6명으로 구성됨.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등의 피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식개선과 홍보 관련 예방 및 대응사업도 수행해 왔음(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홈페이지 자료).

[그림 3-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원스톱 통합지원 내용



자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s://onestop5170.kr/support/victim\\_onestop](https://onestop5170.kr/support/victim_onestop)(검색일: 2025. 11.27.)

### (3)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2022년 3월에 개소하였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사업실의 폭력예방대응통합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팀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팀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구성함. 피해접수 및 상담지원, 동행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8]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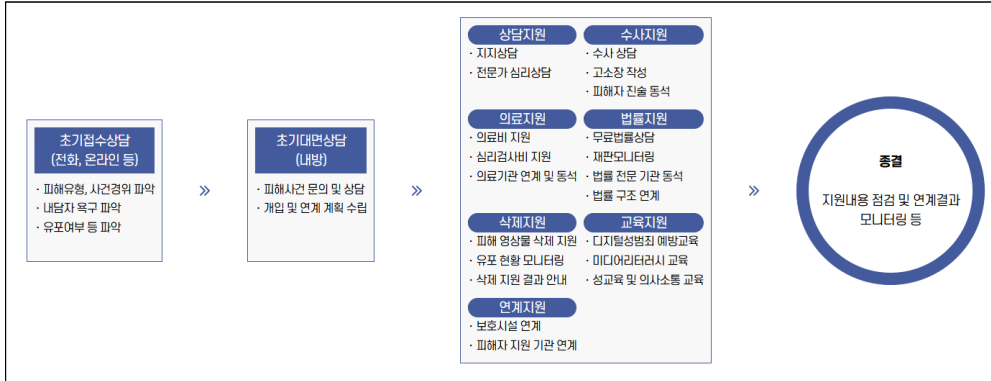
<p><b>상담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접수</li> <li>• 지지 상담 지지 상담 및 피해 현황 파악 등</li> </ul>	<p><b>치료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상담 등 의료비 직접 지원</li> <li>• 전문가 심리상담비 등 직접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li> </ul>
<p><b>삭제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촬영물 등 긴급 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별 자료 검색 및 삭제 요청</li> <li>- 삭제 요청 결과 점검 및 재유무 모니터링</li> </ul> </li> <li>• 피해자별 삭제 현황 리포트 제공(1개월 x 3회, 1년, 3년)</li> <li>• 채증 자료 작성 지원</li> </ul>	<p><b>동행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작성 지원 고소장 작성, 탄원서 제출 등 서류작성 지원</li> <li>- 동행 지원 신고 및 조사, 진술 및 재판 등 동행 지원</li> <li>- 모니터링 지원 검경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li> </ul> </li> <li>•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법률자문단, 무료법률서비스 연계 등 법률 지원 조력</li> </ul> </li> </ul>

자료: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8150382.or.kr/>(검색일: 2025. 11. 27.)

### (4)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9월 개소 시기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젠더범죄예방사업실을 통합 운영하였음.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접수상담, 상담지원, 수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9]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지원 내용



자료: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biz/digital>(검색일: 2025. 11. 27.)

- 경기, 인천, 서울, 부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기관은 인천을 제외하고는 젠더폭력 관련 통합지원기관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지자체 기관은 초기접수,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들 4개 기관은 삭제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지자체 기관의 장점을 살린 피해자 동반 혹은 동행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 2.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방향

### 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의 방지

#### 1) 2차 피해의 개념과 한계

- 답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빈번하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법」 제8조는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공개 금지’(제8조), ‘범죄신고자등의 불이익 처우의 금지’(제5조)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내용으로는 유포와 유포불안의 영속적인 피해를 발생시

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와 ‘불이익’의 방지에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와 ‘불이익’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등의 피해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방지법」 제8조는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의 고용자는 이들에게 인사, 차별, 성과평가, 교육·훈련,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규정함. 그리고 제36조는 제8조의 위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는 범죄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이나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며, 제5조는 범죄신고자들의 고용주는 범죄신고등의 이유로 범죄신고자들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7조는 제8조의 위반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표 3-6]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불이익’ 관련 법령**

구분	법령	내용
‘2차 피해’ 정의 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li> <li>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li> <li>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li> <li>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li> <li>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li> <li>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li> </ol> </li> </ol> </li> </ol>

구분	법령	내용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규정	「성폭력방지법」 제8조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신고자등의 불이익 처우의 금지'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든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법령	내용
성희롱 관련 처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제3항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처벌	「성폭력방지법」 제36조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신고자등의 불이익 처우 및 인적사항 공개금지 관련 처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검색일: 2025. 11. 10.)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양상과 유형

- 피해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주변인들의 불시 연락과 비난, 소문 등으로 지속적인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함. 특히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된 경우,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치 않는 접촉과 피해 사실 재확인, 만남 강요, 유포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에

실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경험 및 지원욕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88.0%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의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58.0%, 모르는 사람 52%, 가족 28.4% 순으로 나타남. 기관에 의한 2차 피해 경험은 수사 과정 55.7%, 재판 과정 34.1%, 언론 기사 25.0% 순으로 나타남.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 피해영상을 시청한 주변 지인의 연락, ②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로 모르는 사람이 협박하는 경우, ③ 가족이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 ④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등, ⑤ 피해영상물을 특정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 및 묘사하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85-86).

**[표 3-7] 행위자별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의 대표적 유형**

행위자	2차 피해 유형	2차 피해 내용
주변 지인	· 피해영상물 시청 후 지인 간 재유포 과정에서 이를 시청한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형태	“이거 너 아냐?”, “경찰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네가 모르고 있을 까 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	·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보하고, SNS로 피해영상물을 보내면서 조건을 내걸며 협박하는 형태 · 유포된 영상을 잘 봤다고 연락이 오는 형태 · 피해영상물에 인격을 폄하 하는 악성댓글이 달리는 형태 · 유포 영상에 직업, 거주지,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되며, 일상의 삶이 침범되는 형태	“내가 네 영상 가지고 있어”, “이거 너 맞지?” 등으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걸며 협박
가족	·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피해자를 탓하는 형태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언제까지 그리고 있을 거냐” 등 피해자를 탓하는 말
수사 및 재판 과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벌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거나 가해자 편을 드는 듯한 언행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태도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질문 · 반복적인 진술 요청 또는 사건과 무관한 질문 · 피해진술 및 피해영상물을 관계자 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청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 등을 진행	“왜 찍었냐?”, “왜 보냈냐?”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 “수사가 복잡하다”,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들 영상 다 봤을 텐데, 꼭 신고해야겠냐”, “합의금 다 받아 돈 벌 생각이냐?”, “바쁘니까 빨리 결정해라” 등의 비난과 압박
언론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직설적 표현, 피해영상물을 특정하는 키워드 사용 등	무분별한 사례 언급으로 피해영상을 찾는 단서를 제공하거나 재유포를 촉진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pp. 85-86; 주혜선 외(2023). 디지털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pp. 38-71;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4년 사례로 알아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 p. 109.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학교 내 2차 피해 양상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신상 노출, ②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③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 조성, ④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는 것, ⑥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 확산 및 피해영상물 돌려보기, ⑦ 신고 접수 후 피해영상물 확인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피해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103).

**[표 3-8] 학교 내 2차 피해 양상(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차 피해 양상	내용
피해자에 대한 신상 노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하거나, 영상을 찾아보고 소문을 내는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일부러 없는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피해자인 척 하는거 아냐?” “피해자인데 밥도 잘 먹고 씩씩하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함부로 사진을 올리고 그래”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 조성	“000(가해자) 원래 착한 애인데, 모르고 그랬을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난인데 그걸 가지고 왜 신고하냐?” “가해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의 일 가지고 그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가해 학생 면담 시, 원본 파일 및 유포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는 증거 인멸 행위가 될 수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는 것	학급 내 피해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것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 확산 및 피해영상물 돌려보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소문을 내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유포된 피해영상물 URL 공유 및 대화방에 전송하여 돌려보는 경우
신고 접수 후 피해영상물 확인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피해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4년 사례로 알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 p. 103.

-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하고, 관계의 범위가 넓을수록 2차 피해 경험이 많았고, 특히 주변 지인의 연락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였다고 함.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비난과 압박, 언론의 무분별한 사례 언급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

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 교육과 위반 시 단호한 조치 등이 필요하며, 엄격한 언론 보도지침이 요청됨(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85-86).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유형에 관한 정의와 2차 피해의 실질적인 법적 처벌 조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음.

## 나. ‘딥페이크 성범죄’ 용어의 불명확성

- 2024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일련의 대학가 디지털 성범죄사건 발생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가 확산되었음.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중의 직관적 이해가 수월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정책적 용어에서 학문적 용어까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협의로 해석하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포토샵 기술 정도의 간단한 기술로 합성하여 제작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적 용어가 필요함.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대중적 용어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라는 기존의 법률 용어의 장점을 살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다양한 수준의 성적 합성물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의 개발이 필요함.
- 한민경은 허위영상물을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편집물, 복제물 등을 편집 및 반포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혹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의 의미와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실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이미지의 제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실제로는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을 뿌린 것처럼 합성” 하거나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위하는 영상물”, “조잡한 편집물”, “피해자의 다리나 가슴이 부각되도록 편집한 이미지” 등이 모두 허위영상물로 의율되고 있다는 것임(한민경, 2024: 58-64).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의율되는 것 중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그 비율이 높지 않으며, ‘진짜 같은 가짜’를 전제한 형사사법기관의 접근과 실제 범죄현상 간의 괴리로 인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합성·편집’이라는 용어로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스톱지원센터는 ‘불법합성’이라는 용어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음(경기도젠더폭력

통합대응단, 2025b).

- 배상균 등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영상을 합성한 편집영상물을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라고 규정함(배상균, 2019; Security Hero, 2023; Deeprtrace, 2019).
- 서승희(2017)는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합성과 편집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중 지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이버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지인능욕은 여성지인의 셀프카메라 사진(이하 셀카)에 직접 사정(射精)하거나 정액을 합성한 사진을 사이버공간에 게시, 여성지인의 셀카를 ‘아헤가오(성적인 쾌감에 찬 얼굴을 칭하는 일본 은어)’ 표정으로 합성하거나 누드사진에 얼굴 합성하여 게시, 여성지인의 셀카를 성적인 모욕과 함께 게시하기 등의 행위들”이라고 지적함(서승희, 2017: 63). 정사강, 홍지아는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가해자의 시선을 전제한 용어라고 지적함(정사강, 홍지아, 2025: 54).

**[표 3-9]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사 용어**

용어	내용
지인능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승희(2017)는 지인능욕을 여성지인의 셀프카메라 사진(이하 셀카)에 직접 사정(射精)하거나 정액을 합성한 사진을 사이버공간에 게시, 여성지인의 셀카를 ‘아헤가오(성적인 쾌감에 찬 얼굴을 칭하는 일본 은어)’ 표정으로 합성하거나 누드사진에 얼굴 합성하여 게시, 여성지인의 셀카를 성적인 모욕과 함께 게시하기 등의 행위들이라고 설명함</li> <li>- 정사강, 홍지아(2025)는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가해자의 시선을 전제한 용어라고 지적함</li> </ul>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로 규정</li> <li>- 한민경(2024)은 허위영상물을 이미지 기반 성학대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으로 규정.</li> </ul>
딥페이크 포르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영상을 합성한 편집 영상물</li> </ul>
딥페이크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편집물, 복제물 등을 편집 및 반포하는 일련의 행위</li> </ul>
합성·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합성·편집’이라는 용어로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음</li> </ul>
불법 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합성’이라는 용어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음</li> </ul>

자료: 한민경(20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2025b); 배상균(2019); Security Hero(2023); Deeprtrace(2019); 서승희(2017); 정사강, 홍지아(2025)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작성.

- 최근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처음 주목을 받았던 2010년대 중반에 가해자의 시선을 전제로 한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신설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라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음.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서는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주목하여 ‘합성·편집’으로 불리었고, 경기도의 경우는 ‘합성’ 방식의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강조하고자 ‘불법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해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협소한 의미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경우를 특정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기존의 법률 용어인 ‘허위영상물’ 범죄는 ‘가짜, 페이크’를 의미하는 ‘허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기술을 이용하는 합성 범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물’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폭력과 범죄가 지니는 성적 대상화와 성적 착취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음.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제작되는 성착취물 합성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며, 대중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만 범죄로 협소하게 이해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용어가 지닌 직관성의 장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성범죄’이라는 용어도 고려할 수 있음. 또 하나의 대안으로 간단한 기술을 이용한 합성 및 편집물 등부터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을 포괄하여 ‘성적 합성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는 ‘원본 없는 합성물’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범망을 피하고자,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본 없이 특정인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성적 이미지화하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원본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며 협박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 대안이 요구됨.

#### **다. ‘불안피해’의 대응 방안 부재**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유형은 바로 ‘유포불안’이며, 경기도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중에서도 ‘유포불안’ 피해가 가장 많았음. 유포불안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해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일상의 삶까지 삼켜버리는 피해는 유포불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일단 디지털 형태의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나면, 아주 쉽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재유포의 가능성이 생김. 더욱이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어 제작된 성착취물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양적 생산과 유포가 가능함.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유포불안 피해의 원인임.

- 촬영이 추정되며 상대방이 디지털 이미지나 영상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유포불안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지만, 유포의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적 대응이 어려움.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유포협박이나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유포불안의 피해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유포불안이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처벌 근거는 부재함(김정혜, 2024: 189-190). 이와 같이 유포불안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경기도 등의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등에서는 유포불안을 피해유형으로 명시하며, 전문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의 피해회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유포불안 피해를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법적으로 규정하여, 그 근거에 따라 형사적 혹은 민사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불안피해는 유포 불안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생성 여부에 대한 불안, 소지에 대한 불안 등도 포함될 수 있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촬영물이 없으면서도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협박에 악용되기도 함. 불안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는 불안 피해를 가중시킴. 촬영물을 처음 소지할 시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 삭제 요청을 해도 지속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피해자의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물을 가해자 본인의 기기로 옮기는 행위 등 현행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입법 또는 법 해석의 변화가 요청됨(김정혜, 2024: 189-190).

## 라.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일원화의 문제

-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확대 출범하며,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경기, 인천, 서울, 부산)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전국적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함. 2026년부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명의 인력을 배정하기로 함. 그러나 광역지자체 4개의 지역 지원기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자체인력과 중앙정부가 지원한 인력을 합하면 10명 이상의 인력이 피해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지역센터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 2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3명이 피해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또한 4개의 지역 지원기관은 중앙센터와 동일하게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전환한 지역센터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중앙센터에 연계하고 있음.

- 새로 개편된 전국적인 지원체계는 지역 센터별로 지원 범위의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4개의 지역 지원기관을 제외한 다른 지역센터에는 인구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2~3명의 추가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이며, 삭제지원 담당자를 지역별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삭제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며, 피해영상물과 삭제지원 시스템을 중앙센터와 연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콘텐츠와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중앙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교육을 진행해야 전국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가 동일한 절차와 수준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앙센터는 전국의 디성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해야 할 것임.

## 마. 디지털성범죄 사각지대 피해지원의 한계

- (불법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불법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에 한정하고 있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통화,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 촬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음. 불법촬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거, 복제물로 처벌가능하기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안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되어 게시되는 허위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불가) 피해자의 일상 사진, 개인정보와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게시물에 나란히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편집된 게시물은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 불가능함.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함께 게시되어 그 피해가 다른 성적허위영상물 합성 피해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 개정 혹은 법 해석 변화가 필요함.

- **(비동의 소지죄 신설 필요)** 피해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성적 허위합성물이 아니고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일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협박, 유포 이전에는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특히, 대다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적극적 동의라기 보다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의한 동의로, 그 친밀한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많은 경우 피해자는 “유포 불안” 피해를 겪게 됨. 또한, 실제로 다수의 비동의 유포 피해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해자에 의해 과거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행위에 의해 이뤄진다고 할 때, 유포불안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불안임.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이후 비동意的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는 비동의 소지죄 신설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IV

##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제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2.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재설계



##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센터의 위상 재정립

###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원화

-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는 크게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4개 지역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13개의 지역 상담소(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강원)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중앙센터는 피해자 지원 업무 중 삭제지원만을 수행하고 있고, 13개의 지역 상담소는 삭제지원 외 다른 지원만 수행하고 삭제지원은 중앙센터로 연계하는 형태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 중임. 이와 달리 지자체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4개 지역센터는 상담, 삭제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 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불법촬영물·성적허위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포 피해에 대한 수사 진행에 있어서 유포 현황 파악 등을 피해지원자가 수행한다고 할 때, 삭제지원이 분리되어 진행될 시 지원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원스톱 통합지원 형태의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2025년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센터와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구분 없이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통보한 상황임.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민간 상담소 등의 처우가 열악하고 회계, 행정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지역센터를 일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센터는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고, 지자체 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이중 행정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어 피해자 지원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삭제지원, 피해 사건의 수사 및 법률지원,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 인식제고와 성평등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 센터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음. 피해자 지원의 질이 하향평준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센터와 성평등가족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1) 광역지자체 최초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2021~2023)

-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하 경기도 디성센터)'를 설치하여 광역 단위 기관으로서 적합한 정체성과 역할을 담아내는 '경기도형 모델'을 구성하여, 인천, 서울, 부산 등 후발 광역단위 피해자 지원기관의 참조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타 지자체와 광역기관 등에 피해지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경기도 생산 자료 등을 공유하며 광역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경기도형 모델'은 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피해지원 모델'인 동시에, 대상별 대응역량강화교육과 콘텐츠 개발, 대민 홍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대응 감시단 사업으로 구성된 효과적인 '대응-예방모델'이기도 함. 또한 경찰, 교육청, 도내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이 협력하여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다기관 민관협력 피해자 지원모델'이기도 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상담지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채증, 법률지원(상담 및 구조), 안심지지동반, 수사지원, 심리치유(전문심리상담, 심리치료(의료),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기타지원 등 피해자 필요에 민감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기도형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023년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와 가족(주변인)의 심리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성교육 등으로 구성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를 선발 및 교육하여 도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2021.6.)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무료 법률구조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정보시스템 구축(2021)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지원 서비스별 업무 매뉴얼을 개발함. 매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보고서」를 발간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였고,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여성인권과 관련된 대주제를 중심으로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경기도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제안

여 관련 정책 개발 및 여론 형성에 기여함.

- 226개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기여함.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및 도내 44개 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1366경기센터,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도내 226개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필요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함.
-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전망인 ‘경기도 도민대응감시단’을 운영하였음. 매년 30여 명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민대응감시단’은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세상의 건강한 시민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함.
- 2021년 경기도 디성센터가 개소되면서, 경기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 및 북부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학부모, 양육자 등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존재에 대한 홍보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음. 특히 경기남부와 북부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홈페이지에 경기도 디성센터 홍보용 자료를 상시 게시하며, 피해자등에게 센터를 홍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기도 함.
- ‘디지털성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한 대응역량강화 교육 체계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2021. 7. 9.)을 체결하여, 경기도 초·중·고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관리자, 행정실장 등 교직원, 학부모(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피해발생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대응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기관, 지역아동센터, 이주민지원기관, 장애아동 청소년지원기관, 대안학교 등 아동·청소년 이용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대응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음.
- 국내 유일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까지 교육의 역할을 확대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

관 및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실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서울, 인천, 원주, 대구, 전북, 전남 등 경기도를 넘어 타 지역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교육의 필요성을 전파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법률, 수사지원, 온라인 플랫폼 현황, 아동·청소년 디지털 문화 및 성착취 실태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에게 무료 교육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여, 공공의 책임을 확대함.

## 2)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 제고

- 2024년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면서, 경기도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민관협력, 홍보 기능을 통합대응단에 이관하고, 초기상담과 삭제지원 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게 됨. 그 결과 예방교육, 민관협력, 홍보 등을 통해 도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도민 인식 개선, 피해자지원기관의 존재에 대한 도민의 각인 등의 효과가 저하된 측면이 있음. 복합피해 사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에서 통합대응단이 출발했기 때문에, 복합피해와 젠더폭력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 면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초점을 두는 예방교육과 홍보가 약화되는 부수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음.
- 일반 도민의 시점에서는 개별 젠더폭력을 호명하는 홍보방식이 수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기도 디성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포함된 개별 센터에 대한 홍보 위주로 홍보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 수행하는 도내 유관기관과 다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의 경우도, 젠더폭력통합대응교육의 명칭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교육신청 기관과 대상의 수요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대응역량강화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대응역량강화교육’, ‘아동청소년성착취대응역량강화교육’ 등의 명칭으로 진행되는 것이, 피해지원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임. 물론 개별 교육의 내용 안에 젠더폭력의 복합적 피해 및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경기도 디성센터가 통합대응단의 산하 센터 혹은 하나의 부서로 위치지어지면서,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일원화 통보에도 적절히 대응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 디성센터가 통합대응단 산하의 부서의 위상으로 통합되면서, 센터의 인력이 20여 명 수준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감소했고, 독자적으로 구축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정보시스템이 통합대응단으로 통합되었음. 성평등가족부의 일원화 지침 통보 상황에서, 경기도가 삭제지원 등 피해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센터 수준의 인력 수와 독자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보화 시스템, 예방교육업무, 홍보업무, 민간협력업무, 전문법률지원단, 전문심리상담단 등을 갖춘 종합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기관이므로 여타의 지역 특화상담소와는 다른 별도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무엇보다도 통합대응단이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등 다양한 젠더폭력의 복합피해사례 관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통합대응단 피해지원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지역센터로 위상이 정해진다면, 기존 수준의 피해지원 성과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또한 2023년 경기도 디성센터 인력이 20여 명 수준에서 현재 통합대응단의 인력이 60여 명(현원 56명)으로 3배 증가했지만,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양적·질적 측면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통합대응단의 인력과 사업에 대한 지원 유지가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의 일원화 방침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통합대응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삭제지원 등 피해지원 업무 이외에 예방교육과 홍보 등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정도 회복하는 개편이 필요할 것임. 종합적인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기관으로서의 규모와 기능의 회복을 통해, 중앙기관의 지역센터가 아닌 ‘거점 센터’ 정도의 명칭과 기능과 역할, 운영 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2.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재설계

-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도내 경찰청과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게시 및 홍보하고, 도내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성범죄 알아차리기와 피해 입지 않

기 중심의 예방 교육에서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주변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가. 디지털성범죄 알아차리기와 피해 입지 않기 중심의 예방교육

-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디클(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 <https://dicl.kigepe.or.kr/>)을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을 하는 동시에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제공 및 보급하고 있음.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중학생 연령대(13~15세), 고등학생 연령대(16~18세), 교사·양육자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함(디클 홈페이지). 디클에 게시된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개요는 [부록] 참조.
  - 초등학생 연령대 콘텐츠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불법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를 게임, 퀴즈, 웹뮤지컬 등의 형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됨.
  - 중학생 연령대의 콘텐츠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합성,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 공간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혐오표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에 대한 소개, 주변인으로서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고등학교 연령대의 콘텐츠는 불법촬영,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가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허위정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콘텐츠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대상의 콘텐츠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에 관한 콘텐츠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육자의 태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됨.
- 성평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위험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 디지털 세상에서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지원 서비스와 제공기관의 소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자가점검과 예방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주요 내용**

콘텐츠명	내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G-SEEK)	- 범죄의 디지털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텔레그램 성착취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사이버 스토킹, 딥페이크와 지인능용)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젠더폭력 개념과 유형, 디지털 성범죄 개념, 아동청소년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소개(불법촬영, 불법합성, 불법도용,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유포, 유포협박, 몸캠피싱,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와 유인 강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피해, 피해지원서비스 소개

자료: 경기도 지식 홈페이지. <https://www.gseek.kr/>(검색일: 2025.11.12.);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2024). 2024년 젠더폭력 예방교육 공통강의안.

## 나.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주변인 교육으로의 전환

-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내용과 피해를 피하기 위한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교육 대상을 잠재적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설정한 후,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러한 피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2024년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잘못이며 범죄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의 경험률은 40.8%(가해 4.0%, 피해 21.6%, 가해와 피해 15.3%)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 1) 2차 피해 내용 중심의 교육구성

- 우선, 내용 면에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사례에 대한 이해 증진에서 초점을 전환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임.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음.
  - 피해영상을 시청한 사람(지인, 모르는 사람 등)이 피해 내용이나 피해영상을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 포함)

- 유포된 개인정보를 통해 만남 등을 요구하거나 유포협박을 하는 행위
  - 피해영상물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
  - 피해자의 책임과 잘못으로 비난 및 압박하는 말과 행동, 피해를 별일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말과 행동,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과 행동,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찾아보고 소문을 내거나, 집단 따돌림하는 행위
  - 유포된 피해영상물의 URL 공유 및 대화방에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키워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영상물을 지칭하는 행위 등
-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별 사례 소개 후, 2차 피해의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의 심각한 결과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 존중과 상호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가짜뉴스나 다편이크 성착취물 등의 허위조작정보를 구별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 능력 배양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4-2]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구성 예시**

2차 피해 유형	사례 내용	전달 메시지
피해영상물을 시청한 사람 (지인, 모르는 사람 등)이 피해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전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 포함)	어느 날 회사 사람이 저에게 잠깐 볼 수 있냐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혹시 이거 N미 아니야?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 데 어쩌다 보니 보게 됐어요. 영상 제목에 이름도 같고 여기 얼굴도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라도 하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람이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고 제 이름과 태어난 해까지 같이 유포되어서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제 피해를 알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만 와도 겁이 났고, 스마트폰 소리 자체에도 민감해져서 알람을 맞추지 않고 살았어요. 심한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 사례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지인들의 연락, 직장 내 괴롭힘(소문, 퇴사 압박 등)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있음. - 가족, 지인, 회사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또다시 인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또 부당한 일을 겪는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우리는 흔히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지인의 성적 영상물을 발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며, 다수의 사람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함. -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는 대인기피, 우울, 불안 등의 신체
	가장 힘들었던 건 조금 나아질만 하면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이거 너 아니야?”라고 하는 거였어요.	

2차 피해 유형	사례 내용	전달 메시지
	그냥 알고만 지내던 지인들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찾아보고 소문을 내거나, 집단 따돌림 하는 행위	게다가 처음에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걸 알려준 회사 사람이 회사 내에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게 인사팀에도 들어갔어요. 그 뒤로 소문을 낸 사람은 멀쩡한데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인 저에게 회사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저를 흘깃 쳐다보는 일도 많았고, 괜찮냐고 묻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요.	적, 정신적 어려움과 수면, 식사, 경제활동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도 힘들어짐. -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제보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킴. - 누군가 지인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알리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조력 방법을 알아보거나 제3자 경찰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 : <a href="https://ecrm.police.go.kr">https://ecrm.police.go.kr</a>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제3자 불법영상신고( <a href="http://www.kocsc.or.kr">http://www.kocsc.or.kr</a>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임.
피해자의 책임과 잘못으로 비난 및 압박하는 말과 행동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실직이후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오히려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런 일을 당하니?”라고 해서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감소와 2차 피해 방지 노력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변 지인, 학교, 사회 등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
유포된 개인정보를 통해 만남 등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와서 “이 영상 당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영상을 지울 수 있게 도와줄테니까 자기와 만나 달라는 일도 있었어요.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4년 사례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 p. 87-9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 2) 주변인 접근법의 채택

- 서구 특히 영미권 등에서 주변인에 초점을 둔 성폭력 예방 교육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성폭력 예방 교육은 공동체가 성폭력 예방에 관한 메시지를 경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기존의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높이거나, 동의 등과 같은 성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거나, 개인 간의 폭력은 허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냈다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함(Banyard et al., 2005: 12-15).
- 주변인 교육모델은 성폭력 예방 메시지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주변인의 행위를 훈련하고 지지하는 것에 집중함. 주변인 교육모델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성폭력 이슈에 민감해지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기술을 가르쳐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노출되었을 때 피해자(생존자)를 지지하도록 함. 많은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모델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라고 구별하지 않음. 그러한 메시지는 방어와 저항(defensiveness and resistance)만 부추기지만, 주변인 교육모델은 성폭력 예방 메시지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저항을 줄이며, 성폭력을 둘러싼 공동체 규범과 담론의 변화에 기여함(Banyard et al., 2005: 2; 백미연, 이윤진, 김남숙, 2024 재인용).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은 교육을 받는 청자를 잠재적 피해자와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지 않고, 교육의 대상(청자)을 주변인으로 전제하여, 주변인이 디지털 성범죄가 잘못된 문제라고 느끼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주변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그리고 2차 피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할 것임. 주변인 개입 모델은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라는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성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개입을 이끌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준모. (2024a).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방송통신심의동향**, 28, 55-67.
- 강준모. (2024b).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KISDI AI Outlook**, 18, 1-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023).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4). **2024년 젠더폭력 예방교육 공통강의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a). **2024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피해지원 보고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2025b). **202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4). 다크웹 기반 범죄의 추세와 전망. **치안전망 2025**, 54-67.
- 관계부처 합동. (2024. 11. 6.).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 교육부. (2024. 9. 9.).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434> (최종검색일: 2025. 9. 11.).
- 김두상. (202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찰: 그루밍과 섹스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2(4), 1-21.
- 김명훈, 이상진. (2020).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치안정책연구**, 34(3), 7-39.
- 김민지. (2024). 딥페이크의 그늘,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의 보호. **미래정책FOCUS**, 43, 14-16.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수아. (2023).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의 개념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다문화사회연구**, 16(1), 33-62.
- 김수아. (2024).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이화젠더법학**, 16(3), 187-224.

- 김여라. (2024).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2284. 국회입법조사처.
- 김정혜. (2024).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과 가해자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이화젠더법학**, 16(1), 167-217.
- 김호경. (202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법과 정책연구**, 23(4), 83-114.
- 류부근. (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32(3), 29-56.
- 박소영. (2024).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 **NARS현안분석**, 335, 1-14. 국회입법조사처.
- 박소현. (2024).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2272, 국회입법조사처.
- 박순화. (2024).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방지 전략. **방송통신심의동향**, 28, 87-9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 배상균.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3(3), 169-187.
- 배진숙. (2024).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방송통신심의동향**, 28, 78-86.
- 백미연, 이윤진, 김남숙. (2024).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현황 및 강화방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59-95.
- 신성원. (2023).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4), 147-168.
- 심선희, 김숙이. (202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청소년용)**.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라언니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알아차리기(초등학생용)**. 여성가족부. (2025. 4. 24.).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염건용. (2024).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법이론실무연구**, 12(4), 35-66.
- 원은정.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방송통신심의동향**, 28, 70-77.
- 유재홍. (2024). 딥페이크 성범죄 기술 대응 동향. **젠더리뷰**, 2024년 겨울호, 20-27.
- 윤소현. (2024).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본질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2(3), 285-319.

- 이정념. (2024). 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규율을 위한 입법 논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며. **이화젠더법학**, 16(3), 113-148.
- 장근영. (2024). 디지털성범죄 정보실태 분석과 대응. **방송통신심의동향**, 28, 6-21.
- 장응혁, 최대현. (2025). 촉법소년 조사의 개선방안: 제22대 국회 발의안과 딥페이크 포르노 관련 변화를 소재로. **경찰학연구**, 25(1), 29-50.
- 장응혁. (2024).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10(3), 5-24.
- 전운정. (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삭제지원과 유포방지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2274. 국회입법조사처.
- 정경환. (2025).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의 형법적 과제. **법학연구**, 28(1), 1-32.
- 정사강, 홍지아. (2025). 젠더화된 범죄로서의 기술매개 성폭력과 그 피해: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40(3), 53-114.
- 정제용. (2023). 딥웹과 다크넷 공간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코로나19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2(3), 241-264.
- 정준화. (2024).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이슈와 논점**, 2279, 국회입법조사처.
- 정필운, 지성우, 엄주희. (2024).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필운. (2024).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전략과 방안. **방송통신심의동향**, 28, 36-54.
- 조준택, 송영진, 안재경. (2024).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준택. (2024). 디지털성범죄 국내 및 글로벌 리서치 트렌드 비교와 제언. **방송통신심의동향**, 28, 22-35.
- 조혜민. (2025).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여성연구**, 124(1), 5-28.
- 주혜선, 이나빈, 명소연. (2023).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최진웅. (2024a).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NARS현안분석**, 338, 1-15. 국회입법조사처.
- 최진웅. (2024b).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NARS현안분석**, 1-12.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2024년 사례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가이드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민경. (2024).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0(3), 53-86.

## 2. 국외문헌

Australian Government. *Online Safety Act 2021 No. 76*. <https://www.legislation.gov.au/C2021A00076/latest/text>(최종검색일: 2025. 12. 11).

Banyard, Victoria L., Plante, Elizabeth G., & Moynihan, Mary M.(2005). *Rape Prevention through Bystander Education: Bringing a Broad Community Perspective to Sexual Violence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25). *Assembly Bill No. 621*.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VersionsCompareClient.xhtml?bill\\_id=202520260AB621](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VersionsCompareClient.xhtml?bill_id=202520260AB621). (최종검색일: 2025. 11. 24.).

California.Public.Law. (n.d.). *Civil Code*. [https://california.public.law/codes/civil\\_code](https://california.public.law/codes/civil_code) (최종검색일: 2025. 11. 24.).

Congress.gov. (2025). *TAKE IT DOWN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46> (최종검색일: 2025. 11. 24.).

Council of Europe. (2001).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ETS No. 185)*.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the-budapest-convention> (최종검색일: 2025. 11.24.).

Deepttrace. (2019). *The State of Deepfakes: landscape, threats, and impact*. <https://www.deepttracetech.com/> (최종검색일: 2025. 9. 3.).

eSafety Commissioner. (2022). *Deepfake trends and challenges - position statement*.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Commissioner. (2024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Commissioner. (2024b). *Image-Based Abuse Scheme Regulatory Guidance*. eSafety Commissioner.

eSafety Commissioner. (2024c). *Privacy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4*. eSafety Commissioner.

- eSafety Commissioner. (2024d). *Online Safety (Designated Internet Services Class 1A and Class 1B Material) Industry Standard 2024*. eSafety Commissioner.
- European Parliament. (2011). *Directive 2011/93/EU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 European Parliament. (2025). *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7 June 2025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116\\_EN.html](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116_EN.html) (최종검색일: 2025. 11. 24.).
- European Union. (1998).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ttps://eur-lex.europa.eu/eli/dir/1997/66/oj/en> (최종검색일: 2024. 11. 24.).
- European Union. (2016).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16/679/oj/eng> (최종검색일: 2025. 11. 24.).
- European Union. (2021). *Regulation (EU) 2021/12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ly 2021 on a temporary derogation from certain provisions of Directive 2002/58/EC as regards the use of technologies by providers of 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and other data for the purpose of combating online child sexual abuse*.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1232/oj/eng> (최종검색일: 2025. 11. 24.).
- European Union. (2022)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065/oj/en> (최종검색일: 2025. 11. 24.).

- European Union. (2024). *Directive (EU)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1385/oj/eng> (최종검색일: 2025. 11. 24.).
- Florida Seneate(.gov). (2025). *House BILL 757*.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5/757> (최종검색일: 2025. 11. 24.).
- Future of Life Institute. (2025).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 (최종검색일: 2025. 11. 24.).
- LIS Learning Center. (n.d.) *Code of Virginia*. <https://law.lis.virginia.gov/vacode/> (최종검색일: 2025. 11. 24.).
- Martin, N. (2025). Online safety regulation of deepfake abuse: A case study on Australia's eSafety Commissioner. *Griffith Law Review*, 34(1), 23-46. <https://doi.org/10.1080/10383441.2025.2504791>.
- Ricard, Delia. (2024). *Report of the Statutory Review of the Online Safety Act 2021*.
- Rigotti, C., McGlynn, C., & Benning, F. (2024). "Image-Based Sexual Abuse and EU Law: A Critical Analysis". *German Law Journal*, 25(9).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german-law-journal/article/imagebased-sexual-abuse-and-eu-law-a-critical-analysis/B0CF334A0037DE3CA2067B79F506EB87> (최종검색일: 2025. 11. 24.).
- SECURITY HERO. (2023). *2023 STATE OF DEEPPFAKE: Realities, Threats, and Impact*.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 (최종검색일: 2025. 9. 3.).
- South Dakota Legislatue. (n.d.). *Codified Laws*. <https://sdlegislature.gov/Statutes> (최종검색일: 2025. 11. 24.).
- United Nations. (2024).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bating Certain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ystems and for the Sharing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of Serious Crimes*. <https://www.unodc.org/unodc/en/cybercrime/convention/text/convention-full-text.html> (최종검색일: 2025. 11. 24.).

Zamfir, I., & Murphy, C. (2024.). "Cyber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EU".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7146/EPRS\\_BRI\(2024\)76714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7146/EPRS_BRI(2024)767146_EN.pdf) (최종검색일: 2025. 11. 24.).

### 3. 인터넷자료

경기남부경찰청. (2024. 9. 19.).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판매자 및 구매자 27명 검거**. <https://www.ggpolicy.go.kr/main/bbsview.do>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도. (2024. 11. 5.).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용인서부경찰서,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3655&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ED%8E%98](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3655&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ED%8E%98)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도. (2024. 12. 12.). **경기도, ‘핑크수’와 함께하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공익캠페인 전개**.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4054&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4054&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도. (2024. 8. 27.) 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2858&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ED%8E%98%EC%9D%B4%ED%81%AC](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2858&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B%94%A5%ED%8E%98%EC%9D%B4%ED%81%AC)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도교육청. (2024. 8. 27.). **임태희 교육감, “딥페이크 피해 ‘117’ 24시간 전화,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치료 지원**.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 (최종 검색일: 2025. 9. 10.).

경기도교육청. (2024. 9. 2.). **경기도교육청,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응 총력**.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북부경찰청. (2024. 10. 17.). **경기북부경찰청, 딥페이크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퀴즈 이벤트 실시**. <https://www.ggbpolice.go.kr/cop/bbs/anonymous/selectBoardArticle.do> (최종검색일: 2025. 9. 10.).

경기북부경찰청. (2024. 10. 21.). **텔레그램 지인능력 채널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 제작·유포한 피의자검거(구속). <https://www.ggbpolice.go.kr/cop/bbs/anonymous/selectBoardArticle.do#LINK> (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기북부경찰청. (2025. 2. 25.). 경기북부경찰청 - 하이브(HYBE),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ggbpolice.go.kr/cop/bbs/anonymous/selectBoardArticle.do#LINK> (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기북부경찰청. (2025. 4. 11.).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을 운영하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검거. <https://www.ggbpolice.go.kr/cop/bbs/anonymous/selectBoardArticle.do#LINK> (최종검색일: 2025. 9. 10.).
- 경찰청. (2024. 10. 30.).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1101183509350&q\\_tab=&q\\_searchKeyTy=sj\\_\\_1002](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1101183509350&q_tab=&q_searchKeyTy=sj__1002) (최종검색일: 2025. 9. 9.).
- 경찰청. (2024. 8. 27.).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0827160345933&q\\_tab=&q\\_searchKeyTy=sj\\_\\_1002](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0827160345933&q_tab=&q_searchKeyTy=sj__1002) (최종검색일: 2025. 9. 9.).
- 교육부. (2024. 12. 11.).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191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5. 11. 10.).
- 교육부. (2024. 9. 9.).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 (최종검색일: 2025. 9. 9.).
- 국무조정실. (2024. 11. 6.).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59054> (최종검색일: 2025. 9. 9.).
- 김남희 의원실. (2024. 9. 4.).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1260&brd=17&post=1206140&search=> (최종검색일: 2025. 9. 9.).
- 김정화. (2024. 9. 4.).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 전수분석... 집행유예 40% 육박.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031011> (최종검색일: 2025. 9. 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 2. 12.).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3.2배 급증. <https://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최종검색일: 2025. 9. 9.).

- 부산시. (2024. 9. 9.).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부산 관계기관 한자리에**. <https://www.busan.go.kr/nbtnewsBU/164760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EB%94%A5%ED%8E%98%EC%9D%B4%ED%81%AC> (최종검색일: 2025. 9. 11.).
- 서울시. (2024. 8. 28.). **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범죄피해 신속대응**.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8307](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8307) (최종검색일: 2025. 9. 11.).
- 서울시. (2024. 9. 1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9028](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9028) (최종검색일: 2025. 9. 11.).
- 성평등가족부. (2025. 4. 16.). **디지털성범죄 피해, 언제 어디서나 1366으로 상담받고, 가까운 디지센터에서 지원받으세요**.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72](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72) (최종검색일: 2025. 11. 25.).
- 유원수. (2024. 9. 25.). **용인서부경찰서,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교육 실시 예정**. **매일신문**.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716> (최종검색일: 2025. 9. 10.).
- 이동인. (2024. 10. 18.). **전국 70여개 대학 딥페이크 단체방 있다...“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해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11143707> (최종검색일: 2025. 9. 9.).
- 이승지. (2024. 8. 20.). **1,200명 채팅방에 내 얼굴리...또 대학가 ‘딥페이크’**.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8487\\_36523.html?ref=ai-ethics.kr](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8487_36523.html?ref=ai-ethics.kr) (최종검색일: 2025. 9. 9.).
- 이우연. (2024. 9. 2.). **딥페이크 피해, 학교로 확산...교사노조 “국가 차원 신고 받아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1155378.html> (최종검색일: 2025. 9. 9.).
- 이종일. (2025. 4. 2.). **‘인하대 여학생’ 딥페이크 영상제작·유포한 男 15명 검거**.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50402122957955> (최종검색일: 2025. 9. 9.).
- 조택수. (2024. 05. 21.). **내 사진이 왜 여기에...서울대 ‘N번방’ 터졌다**.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97152> (최종검색일: 2025. 9. 9.).
- 최서인. (2024. 10. 30.). **‘서울대N번방’ 뒤늦은 후회...주변, 징역 10년 반자 몸부림·눈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267> (최종검색일: 2025. 9. 9.).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8.28.) **지난 1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 지원...AI기반 대응체계 본격추진**. <https://www.stop.or.kr/home/kor/M827891955/board.do?deleteAt=N&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e017addf3ef5b6e0ce4e5a58972d8161&searchValue1=0&searchKeyword=&pageIndex=1> (최종

검색일: 2025. 9. 9.).

OJAMO, J. (2025. 6. 17.).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updated rules to address new technologies. *European Parliament New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0613IPR28905/fight-against-child-sexual-abuse-updated-rules-to-address-new-technologies> (최종검색일: 2025. 11. 24.).

#### 4. 참고사이트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

Deeprtrace. <https://www.deeprtracetech.com>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

SECURITY HERO. <https://www.securityhero.io/>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디클. <https://dicle.kigepe.or.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부  
부



**[부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별 콘텐츠 주제(디클)**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초등학생 연령대 (7~12세)	(웹유지컬) 관심받고 싶어서 친구 합성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방과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그 대결 승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장내일'! 문득, 친구 '우동이'의 사진이 떠오른 내일은 우동이의 사진을 합성한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데... 동의 없는 합성과 업로드는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디지털성범죄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구하면 될지 알아봅시다
	(웹유지컬) 우리가 찍은 영상에 모르는 애가 찍혔다면?	댄스 챌린지 영상 조회수 대박을 노리는 영상파 세 친구!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영상 뒤에 다른 반 친구가 찍혔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 영상을 올려도 될까요? 아님 친구에게 가서 올려도 되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하고 대답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워봅시다.
	(게임) 디클빌 모험: 디지털성범죄 알아차리기	누구나 자유롭게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기고,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의 양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상황은 무엇인지,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게임) 구해줘! 포근 포근 디지털 세상: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SNS이용법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는 법,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릴 때 조심할 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척척박사의 안내를 따라가며 스마트폰으로 SNS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봐요!
	(퀴즈쇼) 레벨업 퀴즈쇼: 디지털 일상 속 함정을 찾아라	하리와 두리 남매 영상 속에서 위험 상황을 찾아내면 디지털 시민성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가장 높은 레벨에 도달한 사람은 우수 디지털 시민 배지를 받게 되는 레벨업 퀴즈쇼! 영상을 보며 디지털 일상 속 함정을 매의 눈으로 찾아볼까요? 또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배워 보아요.
	(메타버스) D-시티 모험을 떠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나이와 성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디지털 세상, 함께 모험하며 디지털 세상의 특징과 디지털 시민의 권리를 알아보아요!
	디클 완전 정복: 40분으로 몰아보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기초! 바로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디클린과 함께 10개의 퀴즈를 풀어볼까요? 게임에 이런 사람 꼭 있다! 다짜고짜 기프티콘 준다는 사람, 동갑이라며 친한 척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게임을 하자는 사람! 장난꾸러기일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일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내가 피해를 겪고 있거나 이상하다고 느끼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영상으로 배워보아요!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신비 금비와 수상한 비밀 채팅방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몰래 채팅하고 있는 걸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랜선 친구 빛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오픈채팅,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신비아파트 친구들과 함께 배워보아요!
	(게임) 탈출!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우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어떻게 예방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차갑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혼이 날까봐 두려운가요? 혹시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나요?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안녕! 디지털 세상 I	나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수업을 합성해서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다니 더는 가만둘 수 없어요! 디지털 세상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사진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몰래 찍힌 사진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위험한 정보와 위험한 사람들도 많은 디지털 세상!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까요?
	안녕! 디지털 세상 II	어느 날 2차 성징이 시작되며 목소리가 변한 정식이 교실과 단체채팅방에서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리왕과 차연은 자신들이 겪었던 괴롭힘이 떠올랐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지 않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른 척했나요? 장난이라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범죄로 진화할 수 있는지 디지털 성범죄 재판을 보며 알아보까요?
	(웹드라마) 불법촬영, 친구라도 안돼요!	모래컴퍼니 소속 키드 크리에이터들, 장난으로 찍은 영상으로 인해 밥도 편하게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지워도 유포는 끝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이 상황,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영상을 찍는게 일상인 크리에이터라면 이 상황을 참아야만 할까요? 하지만 친구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어린이를 위한 동의3탄: 사진과 영상도 동의가 필요해요	장난감을 줄 테니 보봐해줘! 사진을 안 찍어주면 너랑 안 놀래! 이런 이유로 한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중학생 연령대 (13~15세)	오늘도 로그인했습니다 1부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게임에서의 폭언, 온라인 그루밍과 사칭 계정, 개인정보 유출과 입금 협박까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를 웹드라마로 연출한 영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특징을 상세히 알려주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알려줍니다. 끝으로 쿠키영상에서 출연한 배우들이 메타버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도 짚어 줍니다.
	오늘도 로그인했습니다 2부	익명질문 앱에서의 악성댓글과 혐오표현, 그리고 성희롱 문제, 온라인 그루밍과 사칭 계정, 성적인 합성물과 이를 판매·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까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를 웹드라마로 연출한 영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상세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쿠키 영상에서 출연한 배우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주고 신고하는 방법을 짚어줍니다.
	스쿨톡! 학교에서 날아온 고민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 무심코 발생하는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 등 다양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어 보아요.
	그 사진, 동의했나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찍은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다고요? 누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합성해서 돌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장난이라고 하면 내 기분이 나빠도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안전대응 자가점검	온라인 그루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해자들은 기분 좋은 칭찬이나 선물, 용돈, 비밀 이야기로 친해지려 하지 만 진짜 목적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길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개의 자가점검을 통해 가해자들의 패턴 즉, 위험신호를 파악하고,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의문의 채팅, 사라진 친구-온라인 그루밍	수많은 온라인 채팅 속에는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와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말을 건네는 대화가 가득합니다. 혼자 고민하던 우정이가 남긴 쪽지까지...! 우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룩 집어 알려주는 온라인 그루밍	“공부하느라 힘들지? 기프티콘 줄게. 너도 사진 줄 수 있어?” “잔소리 들을 거 같으니까 우리 채팅하는 건 비밀로 하자.”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온라인 그루밍?! 항상 나에게 공감해 주고 선물도 주는 채팅 속 친구! 그 ‘친구’는 나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성적인 말을 합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끊겠다고 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데...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N개의 노력-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다	디지털은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처럼 성범죄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제페토, 경찰, 검찰,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했습니다.
	(브이로그) 인생 첫 경찰서 방문기-수사연계지원	주인공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사기관과 연결해 준 덕분입니다. 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다.
	(브이로그)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피해물 삭제지원	주인공은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삭제지원 제도와 지원 절차, 이후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알아보시다.
	(브이로그) 방학시작! 상담시작!-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	주인공은 방학을 맞이해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수사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상담을 결심했습니다. 세 편의 시리즈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을 통해 피해자지원 기관을 방문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이야기로 듣는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을 아시나요?” 성우가 들려주는 ‘지영’이의 사례를 학생들과 함께 듣고 온라인 그루밍 과정을 살펴봅시다. 내가 만약 ‘지영’이라면 어땠을까요? ‘지영’이가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온라인 그루밍이 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지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게임)J를 위하여-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주변인의 역할	교실,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J를 두고 그를 닮았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J가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인으로서 2차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할지 직접 선택해 가며 문제를 해쳐 나가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의 주변인인지 살펴봅시다.
	상담소 LOG-IN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크리에이터 도티 그리고 법률 전문가 김차연 변호사가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며 느꼈던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영상입니다.
	IF-만약, 당신이라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의 장점으로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지만, 동시에 디지털 범죄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제한을 두는 것보다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설문조사, 실험 인터뷰, 관찰카메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올바른 이용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혐오표현, 이제 그만	일상에서 많이 쓰여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도 때로는 약자를 차별하고 편견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며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알고, 비속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또한, 각자 일상에서 접한 혐오표현 관련 경험을 나누며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처하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고등학생 연령대 (16~18세)	스쿨톡: 온라인 스토킹 편	스토킹이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듯, 온라인스토킹도 디지털 성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가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유형 또한 변화하며, 그 유형 또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교사 및 양육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속성, 온라인스토킹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등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어떻게 쓰고 있나요?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기사 형태로 쓰인 다양한 허위정보의 진위를 여러분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나요? 허위정보의 역사, 정의, 영향을 살펴봄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성착취, 우리는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디지털 성착취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네컷사진'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2편)	“긴가민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동의를 얻긴 했는데, 영 찝찝해요...”, “거절했다가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 봐 걱정될 때는 어떡하죠?”, “거절해도 괜찮은 환경과 분위기는 뭔가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묻고 이에 답하는 방법, 3분 강의를 통해 배워보세요.
	'네컷사진'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1편)	청소년들은 사연을 듣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과 가치 카드를 선택한 후, 오렌지와 그린의 입장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영상을 보며 친밀한 사이에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때 건강한 온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유클즈 온 더 보드	4명의 청소년이 팀을 이뤄 보드게임을 하며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상하는 경험을 하는 형식입니다. 시청자들은 퀴즈를 함께 풀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고, 디지털 시민의 책임과 덕목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처벌 법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끝으로 개인과 집단의 실천과제에 대해 살펴본 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실천을 결심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스쿨톡: 사이버 성적 괴롭힘 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니 현실과 구분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바타를 악용해 성적 행동을 하거나, 사진 전송, 만남 강요, 협박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실제 피해를 당하여도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탈퇴해 버리고 혼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새롭게 나타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아바타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주변 어른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알아두어야 할 사건 해결 과정을 짚어봅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 같이&가치	청소년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할 법한 디지털 폭력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8명의 고등학생이 15개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는지 시청을 하며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디지털 폭력의 피해를 막고 대처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미디어 속 그 장면, 정말 괜찮나요	미디어는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디어 속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장면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다시 보는 시도가 왜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디지털성범죄 해체하기	불법촬영물 소비에 대한 7명의 솔직한 인터뷰! 불법촬영물, 소비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찍고 유포하고 소비하는 것까지가 가해의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몰카', '아동'으로 표현되며, 사소한 행위 혹은 장난스러운 행위 등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사소한 행위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교사·양육자	티처들의 빅픽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다	다큐프라임 형식으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방향을 찾는 리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합니다.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봅시다.
	알디 알디- 알고 싶다 디지털, 알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육자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명 인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양육자들에게 미처 몰랐던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문화를 알려 주고, 디지털 성범죄 종류와 대응법도 알려 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양육자가 조기 발견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교육대상	콘텐츠명	내용
	불법촬영물 보는 사람들, 그들의 변명과 팩트체크	<p>'최근 5년간 초중고 내 디지털 성범죄 1,860건, 30% 이상이 불법촬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p> <p>이처럼 불법촬영 피해와 가해의 문제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소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나아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의 인권보호이며, 피해자와 연대해줄 것을 호소합니다.</p>

자료: 디클 홈페이지. <https://dicl.kigepe.or.kr/>(검색일: 2025. 11.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Tel 031-220-3900 Fax 031-220-3994



[www.gwff.kr](http://www.gwff.kr)



비매물/무료  
93330  
9 788964 327234  
ISBN 978-89-6432-723-4